

수시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2012년 수시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2. 6. 30.

##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수시통계품질진단 연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청이 소유하며, 통계청은 정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수시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2년 6월 30일

정보통신정책학회 김 동 주<sup>인</sup>

연구진

---

책임연구원 김한성(아주대학교)

연구원 이영수(한국항공대학교)

연구원 김현기(통계청 품질관리과)

연구보조원 유도일

##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수시통계품질진단
주제어	무역통계, 정확성, 잠정치, 신고수리일, 출항일
연구기간	2012.3.23~6.30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학회
연구진구성	아주대 김한성, 한국항공대 이영수 교수

본 연구는 최근 언론 등에서 제시한 무역통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관세청에서 작성하는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의 품질향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역통계는 관세청이 집계한 자료를 익월 1일 지식경제부가 수출입동향(잠정치)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익월 15일 관세청은 확정치라고 하며 보도자료를 공표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수출입물류통계는 수출입물류의 처리실적 및 국내외의 이동경로 파악을 목적으로 수출입 적하목록을 기반으로 작성하며, 연간으로 보고서 발간하고 있다.

본 품질진단결과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출통계의 출항일기준의 도입이다.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2-3조(통계계상시점)에 수출의 경우 출항일(선적일) 기준으로 작성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UN 국제상품 무역통계에 따르면 무역통계 기록시점은 '상품이 일국의 경제영역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통계에 계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의 신고수리일기준과 출항일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수출액의 0.4%~0.8%정도 차이로 미미하게 발생함에 따라 출항일기준으로 통계작성을 권고한다. 다만,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신고수리일기준과 출항일기준 자료를 병행하여 제공하며, 과거 자료를 출항일기준으로 집계하여 시계열 유지하는 작업이 정비된 후 출항일기준의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출항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더라도 관세청의 신고수리일기준 자료를 활용한 지식경제부의 익월 1일 수출입동향 보도자료는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통계이용자 및 통계결과에 대한 명확성 부여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발표 자료는 신고수리일기준 잠정치, 관세청은 신고수리일기준 확정치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세청의 경우, 신고수리기준일 확정치의 자료가 정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주석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품목별, 목적국별 수출/수입 정정현황 관리를 통해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C/S시스템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관세청은 '06년 12월 수출입신고 불량률 Zero화를 통한 무역통계 정확성 확보 방안을 여러 가지 제안하였으며, 현재 미이행 부분에 대한 이행을 통한 통계의 정확성 향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P/L 제재조치 외에 오류점수가 높은 관세사를 대상으로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교육 미수료시 그에 대한 조치방안을 관세청 내부에서 마련하여 이행을 제안하였다.

여섯째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확성 확보와 일곱째는 수출입물류통계의 작성주기(연간→월간)를 변경하고 총괄표 및 일러두기 보강을 통한 이용자 혼란 및 편의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추가 제언으로는 국가 간의 무역 확대 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수출입을 위한 관련 서류(전자인보이스, 패키리스트 등) 등의 국제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질 경우, 전자적인 방식(ICR, 처방전 스캐너 등)의 도입을 통한 오류 감소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 차 례

<b>제 1 장 개요</b> .....	<b>1</b>
제 1 절 진단목적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	2
<b>제 2 장 통계작성체계</b> .....	<b>3</b>
제 1 절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작성방법 .....	3
제 2 절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작성체계 진단결과 .....	7
<b>제 3 장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분석</b> .....	<b>11</b>
제 1 절 무역통계 자료분석 .....	11
제 2 절 신고수리일과 출항일기준 통계간의 차이 분석 .....	40
제 3 절 국가 간 무역데이터 차이 비교 .....	44
제 4 절 무역통계와 수출입물류통계의 통합 가능성 검토 .....	57
제 5 절 기타 분석결과 .....	63
제 6 절 관세사 및 세관, 전문이용자 FGI 결과 .....	69
<b>제 4 장 무역통계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b> .....	<b>72</b>
제 1 절 단기 개선과제 .....	76
제 2 절 중장기 개선과제 .....	79
<b>제 5 장 결론 및 추가 제언</b> .....	<b>84</b>

참고자료 .....	86
[별첨 1] 연도별 · 정정항목별 수출정정 .....	87
[별첨 2] 품목별 수출액 정정건수 및 정정금액 .....	90
[별첨 3]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	93
[별첨 4]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 .....	99

## 표 차례

[표 3-1] 무역통계 수출액 비교 .....	12
[표 3-2] 무역통계 수입액 비교 .....	12
[표 3-3] 총수출건수 및 수출액 정정건수 .....	14
[표 3-4] 수출 정정내역별 비율 .....	15
[표 3-5] 수출정정 및 표준편차 .....	16
[표 3-6] 정정건수 기준 상위 10개 품목 .....	17
[표 3-7] 정정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	18
[표 3-8] 수출액 정정금액 표준편차 상위 10개 품목 .....	19
[표 3-9] 수출액 정정 품목별 분석 .....	20
[표 3-10] 신고수리일과 최종정정일자 간의 차이 .....	25
[표 3-11] 연도별 신고수리일과 정정일자 간의 차이 .....	25
[표 3-12] 2007~11년 국가별 수출정정 .....	26
[표 3-13] 2007~11년 국가별/연도별 수출정정 : 정정금액 기준 .....	27
[표 3-14] 2007~11년 국가별/연도별 수출정정 : 정전건수 기준 .....	30
[표 3-15] 2007~11년 국가별/연도별 수출정정 : 수출 정정금액 기준 .....	30
[표 3-16] 연도별 최초신고액, 최종정정금액 비교 .....	31
[표 3-17] 변동률 구간과 수출액 차이의 방향성을 함께 고려한 정정금액 ...	32
[표 3-18] 수출액 정정과 통화정정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 .....	33
[표 3-19] 연도별 수입정정건수 .....	36
[표 3-20] 정정기간별 비율 .....	37
[표 3-21] 연도별 정정기간 비율 .....	37
[표 3-22] 정정차수별 비율 .....	38
[표 3-23] 정정기간이 120일 이상인 품목별 비율 .....	38
[표 3-24] 정정내역별 비율 .....	39



[표 3-25] 신고수리일과 출항일기준 수출액 오차 .....	41
[표 3-26] 누적오차 기준 상·하위 10개국 비교 .....	42
[표 3-27] 신고수리일과 출항일기준 수출액 오차 .....	43
[표 3-28] 무역데이터의 국가 간 오차 발생원인 .....	45
[표 3-29] 한국의 수출입 통계 .....	46
[표 3-30] 중국의 수출입 통계 .....	47
[표 3-31] 미국의 수출입 통계 .....	47
[표 3-32] 일본의 수출입 통계 .....	47
[표 3-33]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데이터 오차 .....	49
[표 3-34]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데이터 오차 .....	51
[표 3-35]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데이터 오차 .....	51
[표 3-36] 일본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데이터 오차 .....	52
[표 3-37] 미국 및 중국 데이터에 기초한 양자 간 무역수지 비교 .....	53
[표 3-38] EU의 수출입 통계 .....	54
[표 3-39] EU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데이터 오차 .....	56
[표 3-40] 무역통계와 수출입물류통계의 개요 .....	57
[표 3-41] 관세청의 수출입신고 불량 Zero화 방안 이행내역 .....	67
[표 3-42] 무역통계자료 제공 현황 .....	68
[표 4-1] 수출입 신고건수 및 정정건수 .....	72
[표 4-2] 수출신고 귀책사유별 오류순위 .....	73
[표 4-3] 수입신고 귀책사유별 오류순위 .....	73
[표 4-4] 국가별 무역통계 발표시기 .....	74
[표 4-5]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요약) .....	83

## 그림 차례

[그림 2-1] 수출입통관절차 .....	4
[그림 2-2] 수출업무 흐름도 .....	8
[그림 2-3] 수출신고 정정절차 .....	9
[그림 3-1] 월별 정정건수 .....	23
[그림 3-2] 월별 정정금액 .....	23
[그림 3-3] 한국·미국·일본의 대중국 수출액 오차 비율 .....	52
[그림 3-4] 한국·미국·일본의 대중국 수입액 오차 비율 .....	53
[그림 3-5] 관세청 홈페이지 .....	58
[그림 3-6] 무역통계 배너 클릭 후 화면 .....	59
[그림 3-7] 무역통계연보 및 수출입물류통계연보 보고서 .....	59
[그림 3-8] 수출입물류통계 월간발표 .....	61
[그림 3-9] 관세청 보도자료 화면 .....	65
[그림 3-10] 관세청 수출입 DB 제공화면 .....	66
[그림 3-11] 무역통계자료 제공 현황 .....	68

# 제1장 개요

## 제1절 진단목적 및 필요성

□ 무역통계는 통상정책의 이행을 기록하고 FTA 확산, 신흥개도국과의 교역 확대 등 중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함

- 특히 최근 한·EU FTA, 한·미 FTA의 발효 및 이행,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에 대한 경고가 확산되면서 무역통계에 대한 정부, 언론, 학계의 관심 고조됨

□ 그러나 최근 몇 차례의 무역통계 오류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무역통계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손상됨

- ‘한국-EU 무역통계 정반대 수치..뭐가 맞나’ (연합뉴스, ‘12.1.19), ‘12월 무역흑자 40억 달러라더니 실제론 23억 달러, 기막힌 통계오류...경기전망도 속았다’ (한겨레, ‘12.2.20), ‘한심한 지경부 수출통계...2011년12월 영터리 발표 이어 2월에 또 오류’ (국민일보, ‘12.3.20) 등 무역통계에 대한 비판과 의혹이 제기됨

□ 따라서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하며 무역통계 작성 관련 오류 가능성을 파악하고,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무역통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무역통계 작성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함

## 제2절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취지는 통계법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에 의거 통계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해 실시함
  
-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의 품질관리기반 현황과 자료작성체계 및 자료의 정정사례를 기반으로 진단을 실시함
  - 품질관리기반현황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에 참여하는 구성원 및 통계작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진단
  
  - 진단대상통계가 보고통계임으로 자료의 작성체계(수출입신고, 정정, 통계작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통계작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진단
    - 관세사 및 세관을 방문하여 통계작성 체계 점검
    - 수출입자료에 대한 최초 신고수리일기준 금액과 정정 후 금액간의 비교
    - 신고수리일기준 금액과 출항일 기준 금액간의 차이 분석
    - HS코드별 정정사례가 많은 품목 분석
    - 국가간 무역 데이터 차이 분석 등
  
  - 통계작성을 위한 관련 법령(관세법, 관세청 고시, 대외무역법 등)을 검토하여, 통계의 특성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등을 점검
  
  - 무역통계전문이용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 실시
  
  - 위 진단방법을 기반으로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정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안 및 발전로드맵을 제시

## 제2장 통계작성체계

### 제1절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작성방법

#### □ 통계의 개요(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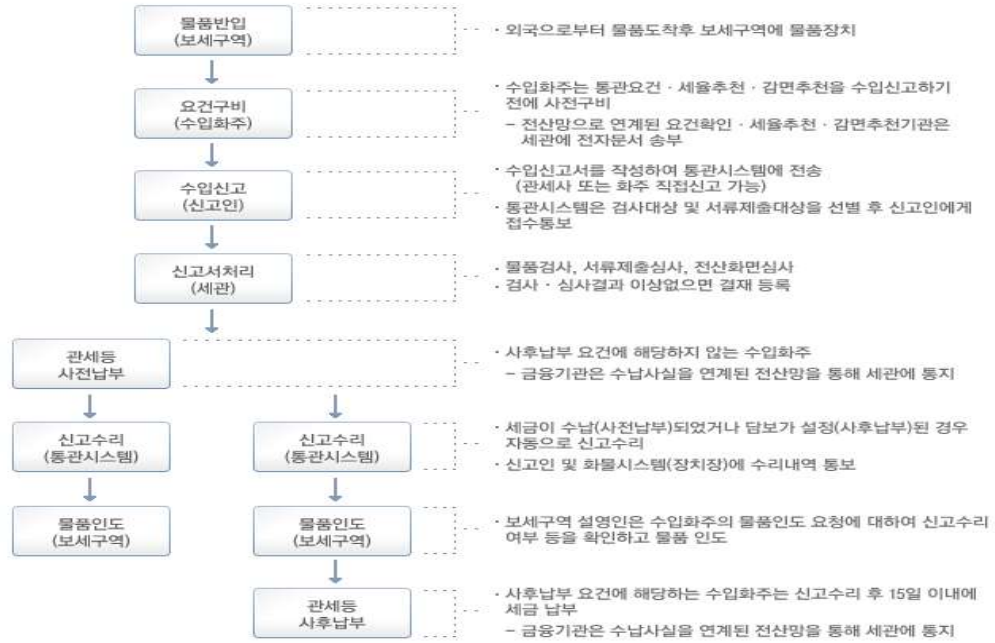
- 무역통계는 “국가별, 상품별 수출입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무역정책 및 관세정책 수립에 활용”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통계임
- 작성기관은 관세청 통관기획과에서 작성하며, 작성주기는 월간으로 1964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1976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은 통계임
- 통계작성내용은 재원별 및 형태별, 기본항목별, 상품종류별, 세관별, 국별, 상품별 및 국별 수출입 자료를 작성하고 있음
- 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진행되고 있음
  - <수출>

1. 수출신고서 작성 및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2. 세관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수출물품 검사선별 시스템(수출C/S)을 통해 자동수리, 심사 및 물품검사대상으로 분류
3. 심사대상 물품은 화면심사 또는 서류제출 심사 등을 통해 수리되고, 물품검사 대상 중 신고지 검사 건은 신고지 세관에서 현품검사 후 수리가 되며, 적재지 검사 건은 수리 후 적재지로 운송하여 물품검사를 하게 된 후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적 되어 외국으로 반출하게 됨
  - ※ 수출신고수리 후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적하여야 함

####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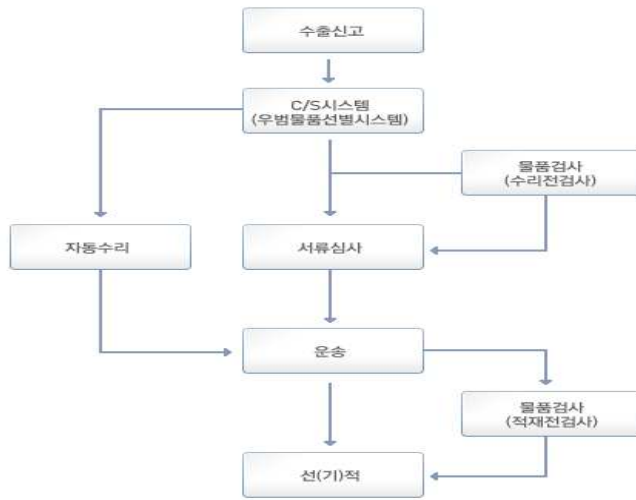
1.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
2. 신고인은 수입신고서 작성 및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3. 세관에서는 접수된 수입신고서는 수입물품 검사선별 시스템(수입C/S)을 통해 전자통관심사, 심사 및 물품검사대상으로 분류
4. C/S구분에 따라 세관의 심사 및 검사 등을 실시
4. 관세 사후납부대상은 세관의 심사 및 검사가 완료된 후 신고수리 되고, 사전납부 대상은 관세 등 제세의 납부까지 완료된 후 신고수리가 이루어짐
5. 신고수리 된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가능

▶ 수입통관 절차



▶ 수출통관절차

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 수출통관 흐름도



[그림 2-1] 수출입통관절차

□ 통계의 개요(수출입물류통계)

- 수출입물류통계는 “수출입물류의 처리실적 및 국내외의 이동 경로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통계임
- 작성기관은 관세청 통관기획과에서 작성하며, 작성주기는 연간으로 2006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은 통계임
- 통계작성내용은 수출입물품의 물량 등을 각 세관별, 국가별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음
- 수출입적하목록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통계임

□ 품질관리기반 현황 진단결과

-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작성을 위한 관세청 통관기획과의 인력은 5급 1명, 6급, 7급, 8급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무역개발원에서 5명이 업무에 담당하고 있음
- 관세청 통관기획과내에 무역통계센터가 있으며, 9명은 무역통계센터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음
- 통계작성에 관여하는 직원들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통계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담당자의 인식 중 “6.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무량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서는 “아니다”라고 응답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작성절차별 진단결과

- 무역통계는 보고통계로 관세청에서 만든 고시(수출입 통관 사무처리 고시, 무역 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등)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통계작성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보면, 특히, 아래와 같이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의 제2-3조(통계계상시점)에 수출의 경우, 출항일(선적일) 기준으로 작성토록 명시, 그러나 현재 무역통계는 수출의 경우,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제2-3조 ②항의 내용과는 달리 '출항일' 기준 자료를 보조통계로 작성하여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물류통계 또한 보고통계이며, 「무역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고시」 제3-1호(물류통계)에서 통계계상시점은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시점,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로부터 출발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음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통관기획과, 2010. 10. 01)」의 제2-3조(통계계상 시점)

①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계계상 시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일자로 한다.

1. 수입물품은 신고수리일
2. 수출물품은 출항일(선적일). 국내 외국기관에 판매되는 경우는 인계한 시점 <신설 2007. 12. 31>

② 수출물품을 신고수리한 경우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작성하여 '출항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 12. 31>

제3-1조(물류통계)

② 물류통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계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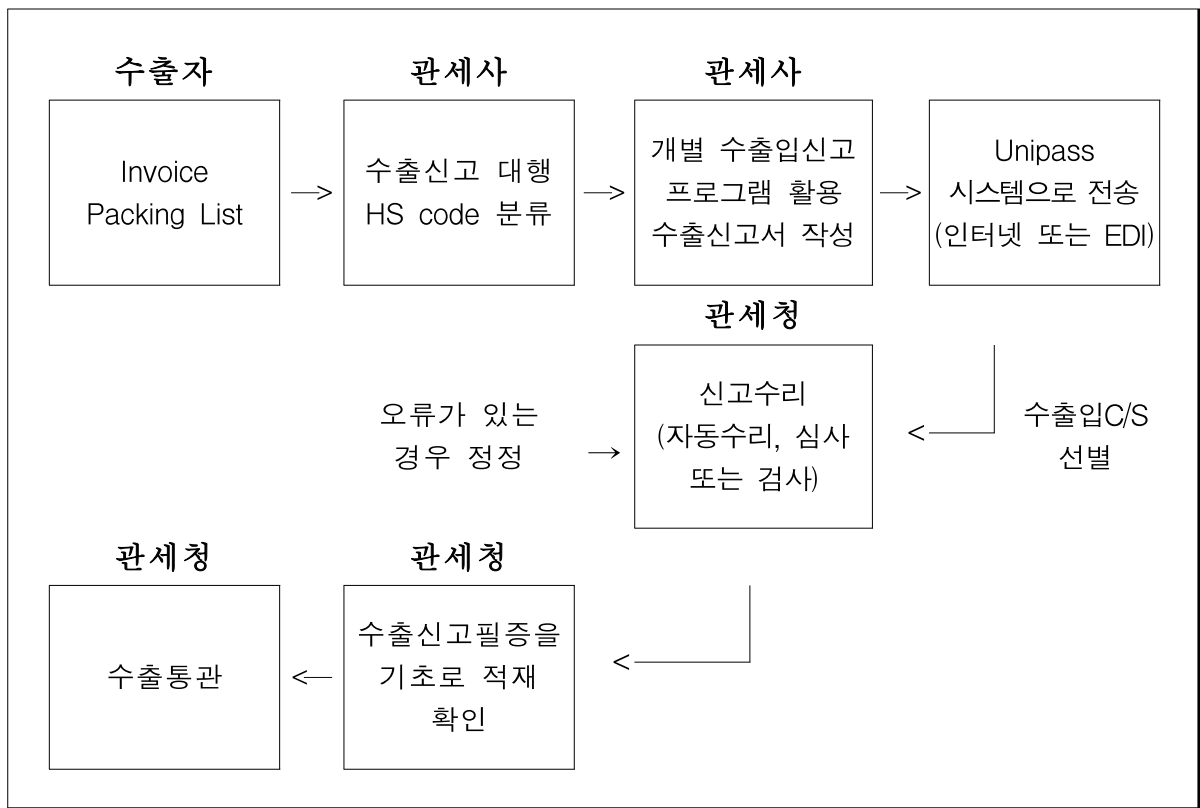
1. 수입화물의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시점
2. 수출화물의 경우 우리나라로부터 출발한 시점



## 제2절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작성체계 진단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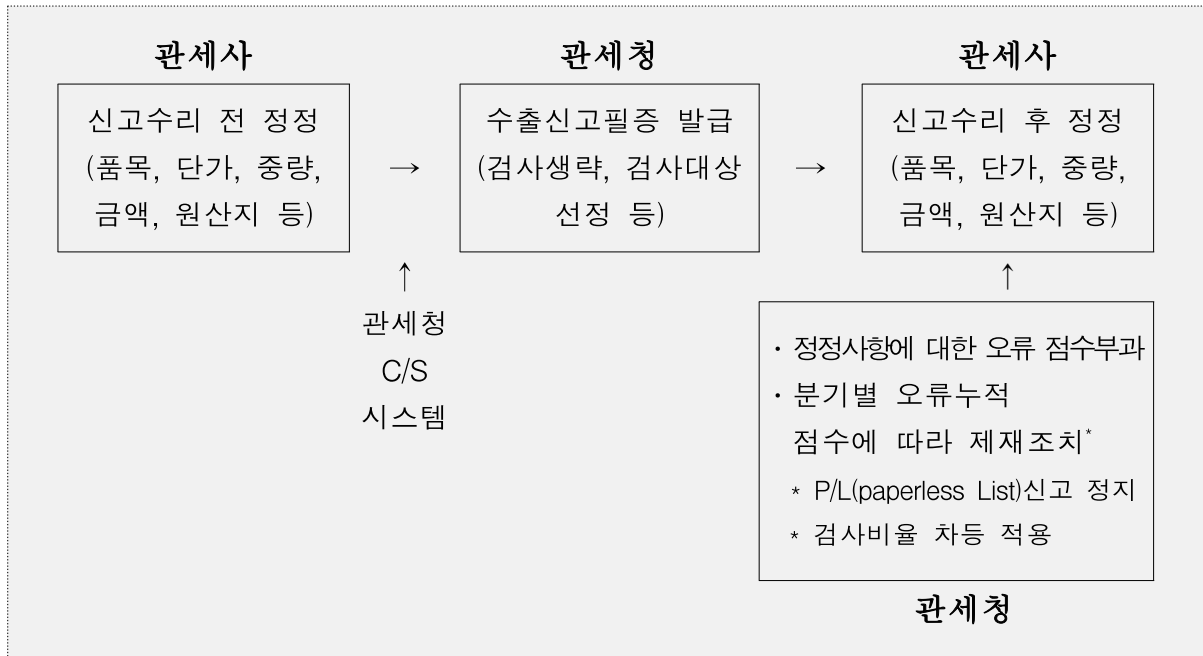
- 통계의 품질진단을 위하여 무역통계에 대한 작성체계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무역통계는 수출입업자와 관세사, 관세청이 모두 통계작성과정에 관련이 되어 있는 통계임
  - 무역통계 작성 절차가 수출입업자와 관세사, 관세청 간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였음
  - 먼저, 수출입업자는 수출입을 위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관세사에게 보내면, 관세사는 수출입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함
  - 관세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이용하여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등을 기반으로 수출입신고를 대행하고 있음
  - 관세사는 관세청의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사항을 전송하여 신고수리하게 됨
  - 관세청은 관세사의 수출입신고서를 기반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신고수리시 검사생략, 검사필요 등의 판정을 하게 됨(C/S 시스템을 활용)
  -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자동수리를 원칙(94%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출신고서의 오류사항을 사전에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 관세법 제251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고인은 신고한 수출입신고항목(신고금액, 수량, 품목사항 등)의 정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또는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통관시스템에 수정 입력함
-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관세사, 관세청의 업무 흐름도는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음



[그림2-2] 수출업무 흐름도

- 수출의 경우, 신고수리 전, 후에 신고서의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내역으로는 품목, 단가, 중량, 금액의 변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정정하게 됨
- 관세청은 정정사유 및 정정의 원인발생에 따라 관세사 또는 화주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정 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P/L신고 정지 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음



[그림2-3] 수출신고 정정절차

□ 통계의 공표에 관한 검토

- 무역통계의 승인기관은 관세청이지만, 현재 당월의 무역통계(수출입통계)를 익월 1일 지식경제부가 수출입동향(잠정치)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익월 15일 관세청은 확정치라고 하여 보도자료를 공표하고 있음  
또한, 관세청은 연말 통계를 마감할 때까지 매월 1월~해당 월까지의 수출입금액 신고정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도하고 있음
- 관세청 DB에도 1월부터 수출입에 대하여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매월 1월~해당 월의 자료가 수정되고 있음  
· 적재되어 출항한 이후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관세청은 연간자료를 매년 익년 1월15일에 확정하여 통계DB를 구축하고 더 이상의 공표된 통계의 수정은 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신고인의 신청 또는 세관의 사후심사 및 불법부정무역 조사 등 결과에 따라 그 금액 등의 정정이 일어날 수 있고 국내·외에 공표된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정 발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유에 기인함

- 하지만, 이것 또한 통계의 정확성 측면에서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자료임
  - 수출입신고사항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익년 1월 15일 자료를 확정하여 수출입 금액으로 확정짓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함
- 지식경제부는 관세청으로부터 신고수리일 기준 자료를 제공받아(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근거), 익월 1일 수출입동향(잠정치)라는 명목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관기록 등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2조(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①항 2.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품명·수량·금액, 거래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동일한 자료원을 기반으로 통관실적 잠정치, 확정치라는 용어로 발표하는 자료에 차이가 발생함으로 무역통계의 신뢰성에 대하여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3장 5절에서 다시 다루어 설명하도록 하겠음

## 제3장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 분석

### 제1절 무역통계 자료 분석

#### 1. 진단배경

- 현행 무역통계는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정부의 공식 발표는 지식경제부의 잠정치 발표, 관세청의 확정치 발표 및 전월 확정치 자료 업데이트, 연간자료 확정 등 4단계에 걸쳐 발표됨
  - 지식경제부의 잠정치 발표는 매달 1일 이전달의 수출입 통계(신고수리일 기준)를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매달 15일 전월의 수출입통계와 신고정정사항을 반영하여 1월~전월까지의 수출입통계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 특히 수출의 경우, 지식경제부의 잠정치 발표 후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발표 잠정치와 관세청 확정치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2011년도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와 관세청 보도자료를 비교한 결과, 지식경제부의 잠정치와 관세청 확정치 간에는 월평균 약 8.4억 달러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2011년 7월 수출통계는 약 22.4억 달러의 차이가 발생함
  - 또한 관세청의 무역수출액 확정된 자료(보도자료)와 관세청 DB의 자료에도 불일치가 발생함
  - 이는 관세청 무역통계가 해당 연도의 연간자료를 확정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함

[표 3-1] 무역통계 수출액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연월	지경부 (잠정,a)	관세청 (확정1차,b)	관세청 (확정2차,c)	관세청 (DB)	잠확차 (b-a)	확정차 (c-b)	잠확차 (c-a)
2011/01	44,888	44,679	44,679	44,465	-209	0	-209
02	38,959	38,607	38,607	38,467	-352	0	-352
03	48,600	48,074	48,065	48,053	-526	-9	-535
04	49,773	49,153	48,600	48,537	-620	-553	-1,173
05	48,009	47,600	47,600	47,331	-409	0	-409
06	48,200	47,800	47,800	46,737	-400	0	-400
07	51,446	50,600	49,200	48,950	-846	-1,400	-2,246
08	46,384	45,900	45,800	45,792	-484	-100	-584
09	47,118	46,800	46,500	46,511	-318	-300	-618
10	47,357	46,800	46,700	46,613	-557	-100	-657
11	46,969	46,500	46,000	46,013	-469	-500	-969
12	49,700	48,923	47,700	47,744	-777	-1,223	-2,000
2011 월평균	47,284	46,786	46,438	46,268	-497	-349	-846
2011계	557,800	556,514	555,200	555,214	-1,286	-1,314	-2,600

주1: 2011년 11월 관세청 확정2차는 자료가 부재하여 확정치로 기록함

주2: 2011계는 '12.1 공표된 각 보도자료의 2011년 연간 수치임

□ 수입의 경우, 실제로 상품이 수입되는 통관기준으로 작성되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2011년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오차는 적게 발생하였으나 월 약 8천3백만 달러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됨

[표 3-2] 무역통계 수입액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연월	지경부 (잠정,a)	관세청 (확정,b)	관세청 (확정2차,c)	관세청 (DB,d)	잠확차 (b-a)	확정차 (c-b)	잠확차 (c-a)
2011/01	41,926	41,764	41,764	41,981	-162	0	-162
02	36,113	36,146	36,198	36,402	33	52	85
03	45,498	45,293	45,390	45,566	-205	97	-108
04	43,951	44,015	44,100	44,189	64	85	149
05	45,262	45,400	45,400	45,285	138	0	138
06	44,900	44,900	44,900	44,825	0	0	0
07	44,223	44,300	44,300	44,296	77	0	77
08	45,563	45,500	45,400	45,382	-63	-100	-163
09	45,683	45,300	45,300	45,279	-383	0	-383
10	43,066	42,800	42,700	42,710	-266	-100	-366
11	43,057	43,000	43,000	43,010	-57	0	-57
12	45,700	45,518	45,500	45,488	-182	-18	-200
2011 월평균	43,745	43,661	43,663	43,701	-84	1	-83
2011계	524,500	524,375	524,400	524,413	-125	25	-100

주1: 2011년 11월 관세청 확정2차는 자료가 부재하여 확정치로 기록함

주2: 2011계는 '12.1 공표된 각 보도자료의 2011년 연간 수치임

□ 본 소절에서는 이러한 수출입 통계상의 차이를 비교함

- 2007~11년 데이터를 기초로 기간별, 품목별, 수출입국별 무역데이터 오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진단함
- 관세청에서 전달받은 정정데이터의 오류 항목별 정정건수는 【별첨 1】에 정리됨

## 2. 분석방법

-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잠정치 발표에 사용 하였던 무역통계 데이터를 최종확정치와 비교하는 작업이 요구됨
  - 그러나 지식경제부로부터 1일자 무역통계발표에 사용된 원자료를 제공받지 못 하였고 관세청 보관 자료도 최종 확정치 자료만을 보관하고 있어, 각 기관이 매달 1일 혹은 15일 발표에 사용한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함
    - 지식경제부가 매달 1일 사용하는 무역통계자료는 관세청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됨
- 이러한 한계로 인해 무역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확정치 자료를 기초로 관세청 에서 제공한 ‘수출입데이터 수정파일’을 통해 최초로 보고된 수출(입)액과 추후 수정된 수출(입)액을 비교함에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둠
  - 최초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세관을 통해 정정되는 내용을 보고한 정정파일을 전달받아 수출(입)액의 변동 사항을 추적함
    - 수정파일은 수출(입)액에 대한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세번변경, 수출(입)자 정보변경 등 수출(입)신고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에 동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액 변동사항만을 추적하여 최초신고액을 추정함
    - 수출(입)액에 대한 정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정될 수 있으나, 관세청에서 전달받은 파일에는 정정차수가 없고 단순히 이전 기록(Before)과 수정기록 (After)만을 적시하고 있음

□ 한화(KRW)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 정정은 관세청의 수출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전환하여 분석

- 관세청은 일주일 단위로 수출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정정파일의 수출액에 기록된 원화는 관세청이 발표한 동 환율을 적용하여 최초 수출신고액을 추정함

□ 수출무역통계는 관세청에서 제공한 2007~11년 일별/건별 기록을 기초로 작성됨

- 2007~11년 총 수출건수는 수출신고서 작성 기준으로 약 3천5백5십만 건에 달하며 2007년 약 6백2십만 건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8백3십만 건으로 5년 동안 약 210만 건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정정파일에서 수출액 정정(정정번호가 26번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수는 2007~11년 기간에 총 97만여 건으로 수출건수대비 정정건수의 비중은 약 2.72%인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도의 수출건수 대비 수출액 정정비율은 2.36%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고 2011년이 2.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함

[표 3-3] 총수출건수 및 수출액 정정건수

(단위 : 건)

연도	수출건수	수출액 정정건수	수출액 정정비율
2007	6,212,999	146,785	2.36%
2008	6,468,216	173,349	2.68%
2009	6,763,481	188,997	2.79%
2010	7,904,856	210,227	2.66%
2011	8,313,110	242,997	2.92%
총계	35,537,365	968,050	2.72%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3. 분석결과

#### 3-1. 수출

##### 1) 정정내역별 정정 건수 비율

□ 수출 정정자료의 정정유형별 정정건수를 분석한 결과, 규격금액이 14.6%, 규격 단가가 9.5%, 신고가격이 8.3%, 결제금액이 6.2% 등으로 수출금액과 관련된 정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 내역 정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금액 정정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실시

[표 3-4] 수출 정정내역별 비율

(단위 : 건)

분류코드	정정내역	정정건수	비율
55	규격금액	1,731,403	14.6%
54	규격단가	1,130,957	9.5%
52	규격수량	1,113,299	9.4%
26	신고가격	981,672	8.3%
50	모델규격	801,823	6.7%
34b	결제금액	738,207	6.2%
31	총중량	669,128	5.6%
29	포장갯수	619,138	5.2%
27	순중량	592,920	5.0%
32	총포장갯수	570,640	4.8%

##### 2) 연도별 수출정정금액

□ 2007~11년 연도별 수출액 정정금액(최종 정정금액 - 최초금액 추정액)은 아래 표에 정리됨

- 연도별로 2007~09년 정정금액은 약 106억~108억 달러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0년과 2011년 수출정정금액은 각각 115억 달러와 25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남

- 해당 연도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2007년 448만 달러였던 표준편차는 2008~2010년에는 약 365~388만 달러였으나 2011년에는 약 848만 달러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함
- 2010년의 정정금액 확대는 표준편차로 판단해보면 수출액 증가에 따른 확대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2011년의 정정금액이나 표준편차는 해당 연도의 무역 통계에 정정이 대폭 증가했음을 보여줌

[표3-5] 수출정정 및 표준편차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정정금액	표준편차
2007	-10,608.3	4
2008	-10,665.2	4
2009	-10,829.2	4
2010	-11,505.2	4
2011	-24,970.7	8
<b>총합계</b>	<b>-68,313.8</b>	<b>5</b>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2) 품목별 수출액 정정1)

□ 2007~11년도에 수출액 정정이 이루어진 수출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총 968,050건의 수출정정건수 중, 제60류(편물)의 정정건수가 151,249건으로 전체 정정건수의 15.6%를 차지함

- 뒤를 이어 제85류(전기기기, TV, VTR), 제84류(보일러 및 기계류), 제54류(인조 필라멘트 섬유)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들 품목의 총 수출건수 대비 정정건수 비중은 제27류(광물성연료, 에너지)가 21.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60류(편물)의 정정 수출건수 대비 비중도 12.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1) 전체품목에 대한 변동건수 및 정정금액 비중은 【별첨 2】에 정리됨

- 또한 정정건수 기준 10대 품목의 총 수출금액대비 정정금액 비중은 제73류(철강 제품)의 비중인 -15.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제84류(보일러, 기계류), 제72류(철강),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60류(편물) 등도 총 수출금액 대비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제27류(광물성연료, 에너지)는 총수출금액 대비 정정금액의 비중은 0.0%로 정정건수나 총수출건수 대비 비중은 높지만 정정금액 누계는 크지 않음

[표 3-6] 정정건수 기준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건)

HSK	수출건수	수출액	정정건수	정정금액	수출건수 대비 비중	총정정건수 대비 비중	정정금액 대비 비중
60	1,253,031	17,513.2	151,249	-708.7	12.1%	15.6%	-4.0%
85	9,893,483	513,658.4	111,548	-12,113.6	1.1%	11.5%	-2.4%
84	5,009,343	238,744.1	90,120	-17,036.3	1.8%	9.3%	-7.1%
54	894,793	14,841.8	75,501	-414.6	8.4%	7.8%	-2.8%
39	2,911,680	107,964.7	74,090	-4,599.4	2.5%	7.7%	-4.3%
87	2,091,801	254,562.5	50,780	-6,666.1	2.4%	5.2%	-2.6%
72	783,413	102,569.7	36,341	-5,296.5	4.6%	3.8%	-5.2%
73	961,441	43,471.7	29,685	-6,838.9	3.1%	3.1%	-15.7%
27	130,997	172,539.7	27,761	-20.1	21.2%	2.9%	0.0%
90	1,718,927	156,222.9	26,610	-1,927.8	1.5%	2.7%	-1.2%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2007~11년도 HS 2단위 기준, 수출액 정정건수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제84(보일러·기계류), 제85류(전기기기, TV·VTR), 제73류(철강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정금액 누계는 양(+)과 음(-)의 효과를 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난 정정금액을 의미함
- 이들 10대 품목의 정정금액 합계는 -584.8억 달러로 총 정정금액의 85.6%를 차지함

[표 3-7] 정정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건)

HSK	수출건수	수출액	정정건수	정정금액	수출건수 대비 비중	총정정건수 대비 비중	정정금액 대비 비중
84	5,009,343	238,744.1	90,120	-17,036.3	1.8%	9.3%	-7.1%
85	9,893,483	513,658.4	111,548	-12,113.6	1.1%	11.5%	-2.4%
73	961,441	43,471.7	29,685	-6,838.9	3.1%	3.1%	-15.7%
87	2,091,801	254,562.5	50,780	-6,666.1	2.4%	5.2%	-2.6%
72	783,413	102,569.7	36,341	-5,296.5	4.6%	3.8%	-5.2%
39	2,911,680	107,964.7	74,090	-4,599.4	2.5%	7.7%	-4.3%
90	1,718,927	156,222.9	26,610	-1,927.8	1.5%	2.7%	-1.2%
71	310,531	19,500.2	4,598	-1,468.0	1.5%	0.5%	-7.5%
33	185,142	2,903.1	5,525	-1,319.5	3.0%	0.6%	-45.5%
82	481,175	7,011.5	9,758	-1,212.3	2.0%	1.0%	-17.3%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반면에 정정금액 표준편차 기준으로 변동폭을 보면 제97류(예술품·골동품)의 표준편차가 1천9백42만 달러로 가장 높은 표준편차를 기록함

- 정정건수에서는 77건에 불과하지만 표준편차에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여, 정정 수출액 정정폭이 넓은 품목으로 분류됨
- 제84류(보일러, 기계류) 및 73류(철강제품), 그리고 제89류(선박)도 1천만 달러 이상의 표준편차를 기록함
  - 제89류의 경우 수출단가가 높은 선박 및 부품이라는 점에서 변동 편차가 높을 수 있으며, 제73류(철강제품)도 건당 수출액이 높은 품목이라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음

[표 3-8] 수출액 정정금액 표준편차 상위 10개 품목 : HS 2단위

(단위 : 백만 달러, 건)

HSK	정정건수	정정건수 비중	정정금액	정정금액 표준편차
97	80	0.0%	-317.2	19
84	90,120	9.3%	-17,036.3	12
73	29,685	3.1%	-6,838.9	11
89	1,101	0.1%	2,042.3	10
94	5,136	0.5%	-751.7	8
71	4,598	0.5%	-1,468.	8
37	928	0.1%	-274.9	8
44	1,257	0.1%	-289.7	8
72	36,341	3.8%	-5,296.5	7
85	111,548	11.5%	-12,113.6	6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아래 표는 HS 2단위 96개 품목을 정정금액, 정정건수, 총정정건수 대비 비중 및 총수출액 대비 정정금액 비중을 품목별로 순위를 부여하여 각각의 순위를 합산한 결과를 정리함

- 가장 높은 정정금액(-)을 기록한 품목부터 1~96점을 부여하였고 정정건수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품목에 1점을 가장 낮은 빈도를 기록한 품목에 96점을 부여함<sup>2)</sup>
- 또한 수출 및 수출신고 대비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 총정정건수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부터 그리고 총수출액 대비 정정금액비중이 높은 품목부터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각각의 점수를 합산함

□ 동 분석의 결과 낮은 점수를 기록한 품목은 오차의 빈도나 범위가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분류되며, 제60류(편물), 제73류(철강제품), 제72류(철강) 등의 순으로 정정의 폭과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위권에 있는 품목은 대부분 제조업 제품이나, 1차산품 중에 제3류(어패류)가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08류(과실·견과류)도 수출신고에서 수출액 오차의 빈도와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본 소절에서 보이는 방법은 리스크관리를 위한 사례의 하나로 어떠한 기준을 어떠한 중요도로 고려할 것인지 추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HS 2단위가 아닌 HS 6단위나 HS 4단위 분석도 필요함

- 상위에 기록된 품목은 향후 수출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및 관세청의 주의를 요구되는 품목으로 볼 수 있음
  - 보다 세밀한 분석은 HS 2단위가 아닌 HS 4단위 혹은 HS 6단위에서도 가능하나, 동 연구에서는 HS 2단위에서만 분석함
  - 또한 추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나 각 항목별 가중치를 둠으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관심품목 선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 3-9] 수출액 정정 품목별 분석

(단위 : 점)

HS2	정정금액 기준	정정건수 기준	총정정건수 대비 비중	총수출액 대비 비중	합계
60	16	1	5	34	56
73	3	8	41	9	61
72	5	7	21	29	62
19	13	26	22	3	64
48	11	12	33	15	71
03	18	21	19	17	75
21	17	27	27	5	76
54	19	4	8	46	77
74	12	17	20	31	80
33	9	28	43	2	82
08	39	34	4	12	89
22	20	39	29	7	95
39	6	5	57	33	101
94	15	33	45	10	103
29	14	11	11	68	104
84	1	3	81	23	108
61	32	13	28	36	109
82	10	19	76	8	113
87	4	6	61	49	120
20	36	49	31	13	129
44	23	54	54	1	132
70	28	38	40	28	134
78	37	70	9	19	135
76	26	22	37	55	140
58	52	14	17	63	146
62	31	20	69	27	147
11	53	66	18	11	148
07	61	41	16	32	150
85	2	2	92	54	150
71	8	37	89	20	154

HS2	정정금액 기준	정정건수 기준	총정정건수 대비 비중	총수출액 대비 비중	합계
16	42	59	39	16	156
41	34	32	50	40	156
27	62	9	2	86	159
17	46	52	30	35	163
28	24	35	47	57	163
25	50	51	13	51	165
38	22	25	66	52	165
55	49	15	26	76	166
32	29	24	67	47	167
83	33	30	68	37	168
90	7	10	87	64	168
49	38	47	65	24	174
52	60	18	24	72	174
64	30	44	84	18	176
59	48	16	44	69	177
56	35	31	71	42	179
37	25	61	88	6	180
12	54	57	34	38	183
26	64	62	1	60	187
06	75	46	6	66	193
69	43	60	77	14	194
34	47	40	58	50	195
97	21	89	82	4	196
68	45	42	70	43	200
63	57	29	48	67	201
42	51	50	80	21	202
95	44	45	74	39	202
96	40	36	85	41	202
47	68	73	14	58	213
40	27	23	91	73	214
18	73	71	23	48	215
51	55	67	72	22	216
79	70	53	10	83	216
35	58	43	63	53	217
15	76	68	15	61	220
91	66	63	52	44	225
65	59	64	79	30	232
31	63	72	25	74	234
09	69	84	62	25	240
53	83	75	12	78	248
89	96	56	3	94	249
24	41	74	96	45	256
80	74	76	51	56	257
67	65	77	90	26	258

HS2	정정금액 기준	정정건수 기준	총정정건수 대비 비중	총수출액 대비 비중	합계
10	85	86	7	82	260
02	78	85	36	62	261
93	71	83	35	75	264
92	77	58	56	81	272
75	67	80	60	70	277
81	81	65	49	84	279
04	82	88	46	71	287
50	79	55	73	80	287
13	80	79	53	77	289
57	90	81	32	88	291
66	84	91	38	79	292
05	72	87	75	59	293
86	56	82	94	65	297
30	95	48	64	91	298
36	86	92	42	85	305
23	91	78	55	90	314
14	87	96	59	87	329
88	94	69	93	89	345
43	93	90	78	95	356
45	88	95	83	93	359
46	89	94	86	92	361
01	92	93	95	96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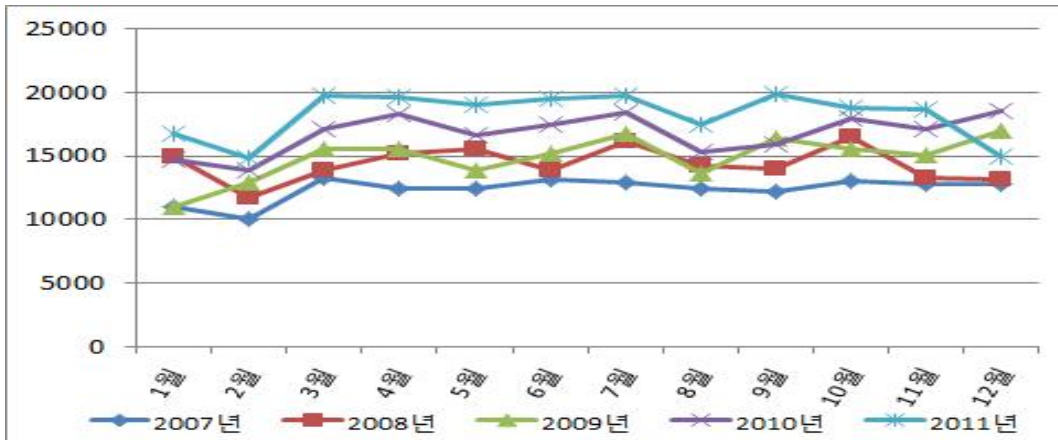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3) 월별 수출정정

□ 수출신고가 된 월별 기록을 기준으로 정정건수 발생 빈도는 아래 그림에 요약됨

- 전체 정정건수 기준으로는 1월과 2월에 총 정정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년과 구정이 포함되는 1월과 2월의 수출실적 및 건수가 다른 달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정건수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여겨짐
- 반면에 수출실적 부풀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었던 6월과 12월에 신고 된 수출 건에 대한 수출정정은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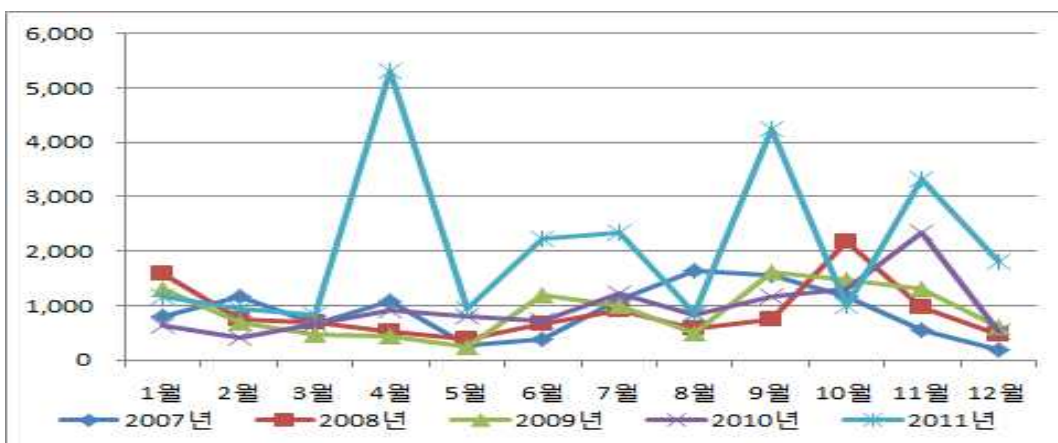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그림 3-1] 월별 정정건수 : 2007~2011년(단위:건)

□ 수출정정금액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도 월별 효과는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

- 월별 편차보다는 연도별 편차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11년도 정정금액은 2007~10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확대하였는데, 2011년 4월 수출신고건의 수출 신고 정정금액은 약 53억 달러에 달함
- 또한 2007~10년 데이터에서는 전반기에 비해 하반기 수출정정금액이 다소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그림 3-2] 월별 누적 정정금액 : 2007~2011년(단위:백만달러)

- 특히, 2011년 4월, 9월, 11월에 월별 정정금액이 큰 이유는 예를 들면,
  - 4월의 경우,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던 HSK 84(보일러 및 기계류)의 수출금액이 정정됨에 따라 발생
  - 정정내역을 파악한 결과 통화단위정정(USD→KRW)과 금액정정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임

1	수출신고번호	란번호	HSK	목적국	최초금액(달러)	최종금액(달러)	변동누계(달러)
	754250	01015	347	1 5407420000 BD	3,640.2	3,701.0	60.7
	754251	01015	347	2 5407420000 BD	855.2	869.5	14.3
	754252	01015	543	1 6001102000 HK	12,109.9	11,075.2	- 1,034.7
	754253	01015	433	1 8428332000 PH	35,955,366.7	32,729.2	- 35,922,637.4

- 9월의 경우, 오스트리아로 수출하려던 HSK 95(완구, 운동용품)의 수출금액이 정정됨에 따라 발생
- 정정내역을 파악한 결과 통화단위정정(USD→KRW)과 금액정정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임

1	수출신고번호	란번호	HSK	목적국	최초금액(달러)	최종금액(달러)	변동누계(달러)
	847909	01015	615	1 6006320000 US	4,370.0	4,501.1	131.1
	847910	01015	615	2 6006340000 US	108,176.0	102,025.7	- 6,150.3
	847911	01015	930	1 9506910000 AT	33,500,000.0	31,250.3	- 33,468,749.7
	847912	11010	316	1 2710195020 CN	2,781,099.0	2,681,097.2	- 100,001.7
	847913	01610	867	1 8480710000 DE	1,093,917.6	911,530.8	- 182,386.8
	847914	01015	794	1 6005320000 US	1,696.0	1,580.1	- 115.9
	847915	01015	794	2 6004100000 US	3,339.0	2,881.4	- 457.6

- 11월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HSK 21(기타의 조제식료품)의 수출금액이 정정됨에 따라 발생
- 정정내역을 파악한 결과 통화단위정정(USD→KRW)과 금액정정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임

1	수출신고번호	란번호	HSK	목적국	최초금액(달러)	최종금액(달러)	변동누계(달러)
	886449	01015	209	1 5407613000 CN	44,586.9	45,241.8	654.8
	886450	02015	573	1 2103909030 CN	9,916,060.0	8,840.5	- 9,907,219.5
	886451	11010	565	1 2807001090 CL	638,516.1	683,070.4	44,554.2
	886452	11010	572	1 2807001090 CL	323,700.0	351,000.0	27,300.0

□ 수리일과 정정일자간의 차이에서는 5일 이내 정정비율이 62.85%, 30일 이내가 88.45%이며, 5년 중 가장 긴 경우는 1,567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음

[표 3-10] 신고수리일과 최종정정일자 간의 차이

기 간	정정건수	정정누적비율(%)
수리 전 정정	401	0.04
5일 이내	578,282	62.85
10일 이내	685,623	74.52
15일 이내	738,345	80.25
30일 이내	813,811	88.45
45일 이내	850,039	92.39
60일 이내	868,147	94.36
90일 이내	886,854	96.39
120일 이내	896,335	97.42
150일 이내	900,535	97.88
1567일 이내	920,021	100

- 연도별로 신고수리일과 정정일간의 차이에 대한 일자별 정정비율은 5일 이내가 약 60%, 10일 이내가 약70%, 15일 이내가 약 80%정도로 5년 전체의 정정기간별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남

· 45일 이전정도이면 약 90%정도가 정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11] 연도별 신고수리일과 정정일자 간의 차이

년도	5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정정건수	정정비율	정정건수	정정비율	정정건수	정정비율	정정건수	정정비율
2007년	93,229	62.7%	110,382	74.1%	118,836	79.9%	13,0556	87.8%
2008년	101,247	58.7%	120,825	70.1%	130,750	75.8%	146,414	84.9%
2009년	111,751	62.6%	133,062	74.5%	143,198	80.2%	158,143	88.6%
2010년	124,604	61.9%	148,637	73.9%	160,639	79.8%	177,646	88.3%
2011년	147,450	67.3%	172,716	78.9%	184,921	84.5%	201,051	91.8%

#### 4) 국가별 수출정정

□ 2007~11년 우리나라 수출에서 수출정정금액 누계가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국가는 총 16개국임

- 중국 수출에 대한 정정금액 누계가 -167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하였고 뒤를 이어 일본(-114억 달러), 이란(-54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들 16개국의 누적 정정금액은 약 574.6억 달러로 동 기간 정정된 정정금액 총액의 84.1%에 해당됨
  - 2007~11년의 수출정정금액 누적은 양(+)의 정정누적을 가진 국가와 음(-)의 정정누적을 지닌 국가를 합한 값으로 정확히 84.1%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다만,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정정이 “0”일 경우 수출정정금액 누계가 84.1% 낮아진다고 해석 가능함

[표 3-12] 2007~11년 국가별 수출정정 : 정정금액 기준 상위 16개국

(단위: 백만 달러, 건)

	국가	수출건수	수출신고액	정정횟수	정정금액
총합계		35,537,365	2,178,245.6	968,050	-68,363.8
1	중국	8,129,958	511,055.9	176,751	-16,683.6
2	일본	3,413,455	144,210.1	101,005	-11,411.0
3	이란	176,917	22,263.7	10,479	-5,429.0
4	미국	3,893,481	235,707.4	120,456	-4,854.6
5	홍콩	2,156,730	114,331.9	44,418	-2,666.0
6	베트남	1,396,001	43,826.1	52,700	-2,611.7
7	필리핀	595,693	27,179.1	14,250	-2,159.0
8	인도	820,175	47,675.4	21,248	-1,774.3
9	러시아	527,664	40,081.9	12,623	-1,510.2
10	UAE	422,323	27,176.2	26,005	-1,455.3
11	요르단	168,673	4,629.2	4,683	-1,285.0
12	멕시코	525,883	42,276.8	13,689	-1,265.1
13	호주	587,678	29,907.1	12,951	-1,191.9
14	태국	796,912	29,711.4	18,586	-1,097.7
15	사우디아라비아	212,137	24,656.2	12,574	-1,063.2
16	인도네시아	940,040	42,162.8	40,130	-1,003.6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중국, 일본, 미국, 홍콩 등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으로 수출액이 높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출정정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란, 필리핀, UAE, 요르단 등은 다소 의외의 국가로 여겨짐

- 또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가 중, 유럽(EU) 국가 혹은 몇몇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에 대한 수출정정이 크지 않다는 점도 특징으로 나타남

- 수출액 기준으로 7위에 해당하는 독일의 경우 수출정정금액은 약 2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하였고 총 수출액 5위와 6위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와 대만에 대한 수출정정금액도 각각 약 3억 5천만 달러와 4억 달러에 불과함
- 이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 품목이 수출정정이 높은 국가들에 수출하는 수출품목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수출국에 따른 country specific한 요인으로 해석 가능함

- 동 16개국의 연도별 수출건수 및 수출신고액, 정정횟수, 정정금액 누계는 아래 표에 정리됨

[표 3-13] 2007~11년 국가별/연도별 수출정정 : 정정금액 기준 상위 16개국

(단위: 백만 달러, 건)

국가	수출건수	수출신고액	정정횟수	정정금액
UAE	422,323	27,176.2	26,005	-1,455.3
2007	66,992	3,704.7	3,117	-5.8
2008	77,384	5,738.9	4,852	-49.1
2009	80,480	4,977.8	5,290	-851.
2010	94,620	5,487.	6,163	-19.
2011	102,847	7,267.8	6,583	-530.3
호주	587,678	29,907.1	12,951	-1,191.9
2007	100,467	4,691.2	2,006	-300.5
2008	101,862	5,167.3	2,453	-159.
2009	111,040	5,243.1	2,383	15.4
2010	130,152	6,641.6	2,757	-44.5
2011	144,157	8,163.8	3,352	-703.3
중국	8,129,958	511,055.9	176,751	-16,683.6
2007	1,409,623	81,985.2	26,050	-2,088.6
2008	1,419,346	91,344.6	32,425	-2,679.4
2009	1,625,660	86,703.2	36,976	-2,671.8
2010	1,839,540	116,837.8	38,690	-2,340.5

2011	1,835,789	134,185.	42,610	-6,903.4
<b>홍콩</b>	<b>2,156,730</b>	<b>114,331.9</b>	<b>44,418</b>	<b>-2,666.</b>
2007	417,263	18,654.5	7,746	-67.6
2008	403,811	19,753.7	8,213	-760.8
2009	423,846	19,661.1	9,032	-774.3
2010	456,544	25,294.3	9,643	-334.8
2011	455,266	30,968.4	9,784	-728.6
<b>인도네시아</b>	<b>940,040</b>	<b>42,162.8</b>	<b>40,130</b>	<b>-1,003.6</b>
2007	157,514	5,770.6	5,142	-102.8
2008	166,919	7,930.5	7,105	-161.6
2009	179,971	5,999.9	7,496	-65.8
2010	207,656	8,897.3	9,296	-260.5
2011	227,980	13,564.5	11,091	-413.1
<b>인도</b>	<b>820,175</b>	<b>47,675.4</b>	<b>21,248</b>	<b>-1,774.3</b>
2007	107,436	6,600.	2,460	-60.7
2008	127,587	8,973.4	3,738	-74.5
2009	156,090	8,013.3	4,404	-256.
2010	189,741	11,434.6	4,711	-121.4
2011	239,321	12,654.1	5,935	-1,261.6
<b>이란</b>	<b>176,917</b>	<b>22,263.7</b>	<b>10,479</b>	<b>-5,429.</b>
2007	27,572	3,265.6	1,375	-69.2
2008	27,718	4,341.2	1,655	-7.8
2009	36,834	3,991.9	2,084	-18.3
2010	43,052	4,596.7	2,626	-24.7
2011	41,741	6,068.3	2,739	-5,308.9
<b>요르단</b>	<b>168,673</b>	<b>4,629.2</b>	<b>4,683</b>	<b>-1,285.</b>
2007	16,293	386.5	415	-92.4
2008	23,970	733.8	723	-37.8
2009	40,562	1,018.6	1,119	-36.3
2010	40,610	1,266.2	1,213	-547.4
2011	47,238	1,224.	1,213	-571.2
<b>일본</b>	<b>3,413,455</b>	<b>144,210.1</b>	<b>101,005</b>	<b>-11,411.</b>
2007	613,970	26,370.2	15,403	-2,158.8
2008	620,313	28,213.1	18,137	-1,526.1
2009	628,901	21,770.8	19,379	-1,375.
2010	751,794	28,176.3	22,327	-3,681.4
2011	798,477	39,679.7	25,759	-2,669.6
<b>멕시코</b>	<b>525,883</b>	<b>42,276.8</b>	<b>13,689</b>	<b>-1,265.1</b>
2007	82,812	7,482.	1,688	-820.7
2008	93,597	9,087.4	2,519	-38.6
2009	95,129	7,132.8	2,384	-47.3
2010	129,198	8,845.5	3,316	-320.3
2011	125,147	9,729.1	3,782	-38.2
<b>필리핀</b>	<b>595,693</b>	<b>27,179.1</b>	<b>14,250</b>	<b>-2,159.</b>
2007	110,074	4,420.3	2,344	-714.6
2008	104,380	5,014.6	2,471	-707.6

2009	109,610	4,567.3	2,686	-109.2
2010	132,279	5,838.	2,842	-500.7
2011	139,350	7,338.9	3,907	-126.9
<b>러시아</b>	<b>527,664</b>	<b>40,081.9</b>	<b>12,623</b>	<b>-1,510.2</b>
2007	82,180	8,087.7	1,423	-19.7
2008	96,311	9,735.3	2,120	-26.1
2009	77,500	4,194.1	2,072	-84.2
2010	115,934	7,759.8	2,854	-211.
2011	155,739	10,304.9	4,154	-1,169.2
<b>사우디아라비아</b>	<b>212,137</b>	<b>24,656.2</b>	<b>12,574</b>	<b>-1,063.2</b>
2007	34,572	4,025.8	1,538	5.
2008	39,320	5,252.8	2,315	-441.
2009	40,125	3,856.6	2,657	-312.4
2010	44,665	4,556.7	2,869	4.4
2011	53,455	6,964.3	3,195	-319.2
<b>태국</b>	<b>796,912</b>	<b>29,711.4</b>	<b>18,586</b>	<b>-1,097.7</b>
2007	134,091	4,488.4	2,467	-18.8
2008	141,361	5,776.1	3,051	-408.6
2009	146,679	4,528.2	3,230	-194.4
2010	181,628	6,459.8	4,513	-138.7
2011	193,153	8,459.	5,325	-337.4
<b>미국</b>	<b>3,893,481</b>	<b>235,707.4</b>	<b>120,456</b>	<b>-4,854.6</b>
2007	711,117	45,766.1	21,862	-1,660.
2008	695,372	46,267.7	22,631	-558.1
2009	709,812	37,649.9	21,059	-919.3
2010	861,938	49,816.1	23,651	-917.9
2011	915,242	56,207.7	31,253	-799.3
<b>베트남</b>	<b>1,396,001</b>	<b>43,826.1</b>	<b>52,700</b>	<b>-2,611.7</b>
2007	208,477	5,760.1	6,490	-389.6
2008	232,341	7,799.5	9,127	-29.3
2009	283,602	7,149.5	10,830	-1,227.5
2010	315,249	9,652.1	11,989	-136.3
2011	356,332	13,464.9	14,264	-829.1
<b>총합계</b>	<b>24,763,720</b>	<b>1,386,851.1</b>	<b>682,548</b>	<b>-57,461.3</b>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2007~11년도 우리나라가 수출데이터 중, 총수출건수 대비 정정건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아래 표에 정리됨

- 2007~11년 데이터 중, 수출 건수가 10,000건이 넘어가는 경우만을 정리한 결과, 캄보디아 수출신고에 대한 정정 비율이 10.9%로 수출신고 10건 중 1건 이상이 정정되었고 프랑스, UAE도 각각 7.2%, 6.2%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정비율을 기록함

[표 3-14] 2007~11년 국가별/연도별 수출정정 : 총신고건수 대비 정정건수 비율  
기준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건)

	국가	수출건수	수출신고액	정정횟수	정정금액	정정건수 비중
1	캄보디아	86,003	1,632.9	9,411	-34.0	10.9%
2	프랑스	310,674	18,591.4	22,408	-30.5	7.2%
3	UAE	422,323	27,176.2	26,005	-1,455.3	6.2%
4	사우디아라비아	212,137	24,656.2	12,574	-1,063.2	5.9%
5	이란	176,917	22,263.7	10,479	-5,429.0	5.9%
6	시리아	42,479	4,451.3	2,406	-52.4	5.7%
7	스리랑카	70,330	1,572.4	3,783	-892.7	5.4%
8	예멘	14,189	720.5	759	-20.0	5.3%
9	터키	254,179	19,342.6	12,435	-229.9	4.9%
10	핀란드	78,083	5,518.8	3,707	-190.9	4.7%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2007~11년 우리나라의 수출이 1천만 달러를 넘는 국가에 대한 정정누계 비중을 살펴보면 자마이카, 모잠비크 등에 대한 총수출액 대비 정정누계 비율은 각각 -91.7%와 -64.7%로 수출액 대비 정정금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 기준 상위 10개국에 드는 국가로는 요르단, 이란과 같이 이전의 기준에도 포함된 국가들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정건수나 정정금액, 총수출액 대비 정정금액 비중이 높은 국가로 분류됨

[표 3-15] 2007~11년 국가별/연도별 수출정정 : 수출액 대비 수출정정금액 비율  
기준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건)

	국가	수출건수	수출신고액	정정 횟수	정정금액	정정건수 비중	정정누계 비중
1	자마이카	4,090	122.2	148	-112.0	3.6%	-91.7%
2	모잠비크	3,003	172.1	89	-111.4	3.0%	-64.7%
3	스리랑카	70,330	1,572.4	3,783	-892.7	5.4%	-56.8%
4	구아나	1,148	195.8	16	-83.3	1.4%	-42.5%
5	도미니카	1,011	39.2	30	-15.5	3.0%	-39.4%
6	요르단	168,673	4,629.2	4,683	-1,285.0	2.8%	-27.8%
7	바레인	19,634	1,487.7	523	-394.9	2.7%	-26.5%
8	이란	176,917	22,263.7	10,479	-5,429.0	5.9%	-24.4%
9	몽골	99,443	1,116.2	2,085	-266.1	2.1%	-23.8%
10	세네갈	5,367	223.1	162	-52.3	3.0%	-23.5%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5) 최초수출액 대비 최종신고액 변동률 분석

□ 수출정정이 이루어진 신고건의 최초신고액과 최종신고액을 비교하여 최초신고액에 비해 최종신고액이 늘어난 경우(+), 줄어든 경우(-) 및 변화가 없는 경우(0)를 구분하여 살펴봄

- 총 968,050건 중 최초신고액에 비해 정정 후의 신고액이 늘어난 경우는 377,922건으로 3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줄어든 경우가 581,884건으로 60.1% 그리고 변화가 없는 경우가 8,244건(1.9%)을 구성하고 있음

□ 연도별 최초신고액과 정정 후 신고액의 방향성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테이블에 정리됨

- 연도별로(-)인 경우와(+인) 경우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3-16] 연도별 최초신고액, 최종 정정금액 비교: 2007~11년

(단위: 건)

연도	변동 비교	정정횟수	비중
2007	0	1,058	0.7%
	-	92,939	59.8%
	+	61,370	39.5%
2007 요약		155,367	
2008	0	1,406	0.8%
	-	110,986	61.1%
	+	69,126	38.1%
2008 요약		181,518	
2009	0	1,518	0.8%
	-	113,937	60.7%
	+	72,137	38.5%
2009 요약		187,592	
2010	0	1,726	0.8%
	-	126,424	59.8%
	+	83,411	39.4%
2010 요약		211,561	
2011	0	2,536	1.1%
	-	137,598	59.3%
	+	91,878	39.6%
2011 요약		232,011	
총합계		968,050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각각의 경우를 변동률이 10% 이하인 경우(1~1.1), 50% 이하인 경우(1.1~1.5), 2배 이하인 경우(1.5~2), 10배(2~10), 100배(10~100), 500배(100~500), 1000배(500~1000), 2000배(1000~2000) 및 2000배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봄

□ 대부분의 정정은 50% 이내 구간에서 이루어짐

- 최초신고액에 비해 최종신고액이 많은(+) 경우 변동이 50% 이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정정 건수의 83.7%이며 최종신고액이 줄어든 경우(-) 50% 이내의 변동폭을 기록한 경우는 83.7%를 기록함

- 반면에 50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최종 정정금액이 줄어든 경우 2007~11년 동안 총 1,645건, 늘어난 경우는 총 2,365건으로 집계됨

- 각각의 경우 연도별 결과는 아래 표에 정리됨

[표 3-17] 변동률 구간과 수출액 차이의 방향성을 함께 고려한 정정금액 : 2007~2011

(단위: 백만 달러)

최초수출신고액 - 최종정정금액 < 0										
연도	1~1.1	1.1~1.5	1.5~2	2~10	10~100	100~500	500~1000	1000~2000	2000 이상	총합계
2007	54,113	23,844	5,762	7,199	1,016	735	161	96	13	92,939
2008	63,000	28,425	7,638	9,110	1,754	721	111	190	37	110,986
2009	67,741	28,242	6,869	8,349	2,070	251	43	325	47	113,937
2010	75,249	30,518	7,794	9,842	2,313	181	32	429	66	126,424
2011	85,427	30,768	7,926	10,021	2,421	219	44	724	47	137,598
총합계	345,530	141,797	35,989	44,521	9,574	2,107	391	1,764	210	581,884
최초수출신고액 - 최종정정금액 > 0										
2007	38,208	13,434	3,627	4,464	862	485	142	126	22	61,370
2008	42,441	14,413	5,122	5,404	1,164	352	59	148	23	69,126
2009	44,884	15,366	4,034	5,780	1,541	242	45	204	41	72,137
2010	53,136	16,964	4,299	6,702	1,604	289	67	295	55	83,411
2011	59,648	17,794	4,708	7,067	1,944	299	72	287	59	91,878
총합계	238,317	77,971	21,790	29,417	7,115	1,667	385	1,060	200	377,922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마지막으로 수출정정이 일어난 경우 중, 수출정정에서 통화단위 변경이 함께 있었던 경우를 아래 표에 정리함

- 2007~11년 수출정정과 통화단위 변경이 동시에 일어난 수출신고의 정정금액은 약 -435억 달러로 총 정정금액 규모의 약 64%를 차지함
- 통화단위 변경과 수출액 정정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는 수출신고시 통화단위 오류를 정정하는 것으로 오차의 범위가 큼
- 특히 월별/국가별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로 정정 건수로는 30,857개에 불과하나(96만 여개 수출액 정정 중에) 정정금액 규모 대비 심각한 오류를 불러옴

[표 3-18] 수출액 정정과 통화정정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 2007~11년

(단위: 백만 달러, 건)

HS2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미합계	210	-127.1	387	-217.9	314	-1,390.2	335	-389.9	330	-534.4	1,576	-2,659.4
01					1	0.4	1	.			2	0.4
02			3	.							3	.
03	25	-27.6	33	-29.9	25	-44.3	29	-64.3	38	-116.1	150	-282.2
04			1	.	1	.			2	-0.7	4	-0.7
05	2	.							3	-5.4	5	-5.4
06	1	.	3	-1.0	2	.	2	-0.5	1	-1.9	9	-3.4
07	3	-0.9	14	-2.2	15	.	5	-0.5	11	-14.0	48	-17.6
08	2	-6.7	3	-3.2	7	-67.4	4	-0.7	8	-0.1	24	-78.3
09	2	-5.0	2	.	3	-1.3	9	-1.0	4	.	20	-7.4
10					3	.			2	.	5	.
11	2	.	6	-5.3	6	.	6	.	3	-2.7	23	-7.9
12	7	-4.9	12	-2.2	11	-1.4	6	-5.2	18	-19.7	54	-33.5
13	1	.	3	-0.3	3	.	1	.	7	-0.5	15	-0.8
15	1	.	2	.	5	-2.9	3	-0.9	1	.	12	-3.8
16	6	-1.1	6	-21.1	7	-3.4	14	-23.0	8	-22.6	41	-71.3
17	4	-2.2	7	-14.2	4	-2.6	9	-36.4	4	-0.6	28	-55.9
18	1	.	1	-0.2	3	.	3	-4.5			8	-4.6
19	18	-32.8	23	-20.8	48	-106.9	34	-278.5	48	-381.0	171	-819.9
20	4	-0.3	12	-35.6	21	-6.2	19	-24.3	30	-27.4	86	-93.8
21	17	-61.2	34	-86.9	68	-126.1	42	-170.1	68	-86.0	229	-530.3

HS2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22	14	-50.2	14	-9.2	45	-18.0	32	-49.6	33	-2,32.9	138	-359.8
23			1	.	1	.					2	.
24	2	-52.7	2	-23.0	4	-5.5	5	-0.5	1	-0.3	14	-82.0
25	1	.	6	.	2	.	8	-5.3	8	-35.3	25	-40.7
26	2	.	1	.	4	-9.7	1	0.1			8	-9.6
27	9	-97.5	7	-107.0	7	.	17	-14.9	16	-53.0	56	-272.2
28	42	-49.3	20	-61.7	21	-58.4	36	-49.1	26	-7.0	145	-225.5
29	31	-3.7	46	-28.7	37	-5.8	64	-44.5	56	-332.0	234	-414.6
30	11	.	22	-1.3	24	0.3	30	-2.2	21	.	108	-3.1
31			2	1.1	2	1.2	1	-4.0	4	0.6	9	-1.2
32	39	-8.2	42	-21.3	45	-115.8	49	-6.5	61	-25.1	236	-176.9
33	44	-17.3	68	-145.6	69	-89.0	88	-494.6	183	-491.2	452	-1,237.7
34	14	-11.0	21	-2.4	25	-10.7	18	-2.9	38	-31.2	116	-58.1
35	9	.	14	-0.3	13	.	8	.	12	-20.0	56	-20.4
37	10	-3.9	11	-6.7	4	.	4	-5.6	13	-11.3	42	-27.5
38	38	-3.1	43	-3.9	68	-11.2	71	-20.7	77	-46.6	297	-85.5
39	363	-313.7	384	-284.3	445	-172.8	493	-415.3	604	-859.0	2,289	-2,045.0
40	75	-81.4	66	-18.1	64	-11.9	63	-8.0	85	-70.7	353	-190.0
41	5	.	29	0.1	3	-0.1	8	0.1	6	0.1	51	0.2
42	27	-1.1	49	-15.9	39	-6.6	37	-9.5	59	-6.4	211	-39.5
43	1	.			1	.			8	.	10	.
44	1	.	10	-1.4	28	-278.3	10	.	13	-2.5	62	-282.2
47							4	0.1			4	0.1
48	111	-62.3	117	-18.5	132	-56.5	118	-48.4	221	-991.4	699	-1,177.3
49	30	-44.6	24	-3.9	27	0.1	19	-2.1	34	-21.8	134	-72.3.0
50	2	.	1	-1.8	1	.			3	.	7	-1.8
51	4	.	3	-0.2	1	.			3	-32.6	11	-32.7.0
52	18	-0.6	7	-5.3	6	.	9	-0.1	10	-2.2	50	-8.1
53	1	.	2	.							3	.
54	106	-3.0	86	-13.1	53	-177.1	61	-7.8	77	-97.4	333	-298.5
55	30	-2.0	33	-5.3	26	-1.5	27	-0.9	35	-4.7	151	-14.4
56	17	-12.4	29	-41.5	11	-0.7	18	-0.9	36	-42.0	111	-97.4
57			1	-0.1			1	.			2	-0.1
58	16	-1.0	7	-0.4	10	-6.3	17	-0.7	14	.	64	-8.4
59	27	0.3	48	-10.7	46	-2.2	32	-1.6	32	-6.0	185	-20.2
60	106	-3.1	58	-13.7	18	-67.8	39	-24.1	37	-288.1	258	-396.7
61	53	-30.4	49	-10.9	89	-43.4	105	-17.0	101	-33.6	397	-135.3
62	60	-7.7	66	-10.1	126	-45.2	127	-22.8	127	-70.5	506	-156.4
63	37	-0.4	32	-0.7	32	-28.7	41	-13.6	29	-1.3	171	-44.8
64	14	-0.3	30	-118.6	25	-3.6	34	-2.1	40	-56.8	143	-181.4
65	10	.	12	-1.0	21	-0.9	18	-20.1	11	-4.7	72	-26.7
66									1	.	1	.
67	6	-4.5	8	.	2	-0.5	8	-2.3	9	-4.8	33	-12.2
68	28	-0.9	36	-44.6	34	-4.7	39	-1.3	36	-10.6	173	-62.1
69	8	.	9	-0.4	18	-4.4	11	-0.1	10	-5.5	56	-10.3
70	45	-34.2	40	-16.0	39	-4.1	44	-2.7	43	-101.8	211	-158.7
71	65	-17.1	109	-47.5	100	-81.8	123	-313.0	119	-53.6	516	-513.0

HS2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건수	정정금액
72	238	-401.4	186	-223.2	189	-145.7	442	-342.4	238	-1,011.8	1,233	-2,124.5
73	238	-1,190.2	294	-268.1	288	-1,140.2	321	-374.4	423	-2,335.9	1,564	-5,308.8
74	32	-15.3	42	-16.7	22	-79.5	33	-129.1	37	-322.8	166	-563.2
75	2	0.6	3	-11.8	7	-4.2	3	0.9	2	.	17	-14.5
76	44	-74.0	50	-28.6	50	-18.0	64	-53.8	88	-32.6	296	-207.0
79	1	.	.	.	2	.	1	.	2	-1.3	6	-1.3
80	1	.	.	.	1	.	1	.	.	.	3	.
81	3	0.2	13	-1.9	8	-4.3	6	-0.9	7	0.1	37	-6.8
82	130	-33.8	127	-22.1	130	-85.4	150	-28.7	137	-48.6	674	-987.6
83	24	-1.4	49	-2.3	35	-6.5	51	-4.4	45	-6.1	204	-20.7
84	951	-1,442.7	1,207	-657.1	1,131	-826.1	1,286	-1,838.4	1,569	-4,481.8	6,144	-9,246.1
85	768	-201.2	887	-744.9	812	-453.2	932	-866.5	832	-1,034.1	4,231	-3,300.0
86	.	.	1	.	7	-1.3	5	8.5	4	-2.6	17	4.7
87	228	-293.4	259	-462.4	370	-1,190.4	403	-970.6	631	-2,614.9	1,891	-5,531.7
88	9	-0.3	8	.	4	.	5	-2.0	9	-1.3	35	-3.6
89	2	.	.	.	2	0.4	.	.	1	-0.5	5	-0.1
90	283	-77.0	285	-194.1	276	-265.3	356	-574.0	388	-233.4	1,588	-1,343.9
91	7	.	12	-5.6	4	-0.5	6	.	23	-1.6	52	-7.8
92	5	.	1	.	14	.	2	.	6	-0.5	28	-0.5
93	.	.	1	.	.	.	2	.	.	.	3	.
94	37	-2.6	54	-19.1	62	-16.6	58	-16.5	94	-680.3	305	-735.1
95	22	-3.9	49	-3.5	37	-1.4	49	-7.0	22	-38.9	179	-54.7
96	45	-6.3	64	-5.3	52	-13.7	67	-14.1	107	-31.9	335	-71.3
97	.	.	2	-22.6	6	-50.6	3	.	5	-237.3	16	-310.4
총합계	4,908	-4,929.3	5,811	-4,223.9	5,824	-8,145.2	6,706	-7,827.7	7,608	-18,384.5	30,857	-43,510.6

주1: .은 단위미만의 자료임

### 3-2. 수입

- 수입의 경우, 수출에 비하여 금액 및 관련자료에 대한 오류가 적음
- 분석을 위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신고수리자료와 정정자료를 받아 신고번호로 매칭하여 자료를 분석함
  - 주) 관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매칭 등을 실시하였으나,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또한, 관세청에서 제시한 연도별 수정건수보다 적어 자료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둠
- 수입의 경우 정정건수 및 연도별 비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남
  - 연도별로 비교하면, 2008년이 가장 높았으며, 점차적으로 정정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은 2.5%로 가장 높은 2008년과 비교시 절반이하로 낮아짐

[표 3-19] 연도별 수입정정건수

전체			정정		
년도	란별건수	수입 신고건수	년도	란별정정건수	비율
계	59,326,880	37,972,691	계	2,133,177	3.6%
2007	7,952,229	5,667,963	2007	378,104	4.8%
2008	8,202,339	5,850,875	2008	430,333	5.2%
2009	9,448,849	6,699,545	2009	444,243	4.7%
2010	12,873,474	9,143,038	2010	472,603	3.7%
2011	16,061,872	10,611,270	2011	407,894	2.5%

- 수입의 경우, 자료의 정정기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과는 반대로 60일 이후의 정정사례가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은 세관통과 후 관세 부과 등의 업무처리에 의해 수입된 자료가 정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20] 정정기간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0이하	136,979	6.4%
0일	688,664	32.3%
1~5일	57,903	2.7%
6~10일	42,779	2.0%
11~15일	32,560	1.5%
16~30일	62,994	3.0%
31~45일	45,087	2.1%
46~60일	34,900	1.6%
61~90일	55,868	2.6%
91~120일	46,093	2.2%
121~365일	409,489	19.2%
366~730일	399,591	18.7%
731일이상	120,270	5.6%
계	2,133,177	100.0%

- 연도별 정정일자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2011년부터는 120일 이상의 비율은 다른 연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신고당일이전 수정하는 비율도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에는 당일이전 정정비율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1] 연도별 정정기간 비율

건수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0일 이하	16,852	4.5%	20,659	4.8%	27,434	6.2%	35,520	7.5%	36,514	9.0%	136,979	6.4%
0일	86,148	22.8%	109,526	25.5%	156,016	35.1%	159,201	33.7%	177,773	43.6%	688,664	32.3%
1~5일	10,666	2.8%	11,753	2.7%	11,407	2.6%	11,887	2.5%	12,190	3.0%	57,903	2.7%
6~10일	7,327	1.9%	8,094	1.9%	8,262	1.9%	9,040	1.9%	10,056	2.5%	42,779	2.0%
11~15일	4,922	1.3%	5,897	1.4%	6,412	1.4%	6,928	1.5%	8,401	2.1%	32,560	1.5%
16~30일	8,409	2.2%	11,273	2.6%	11,392	2.6%	14,811	3.1%	17,109	4.2%	62,994	3.0%
31~45일	7,066	1.9%	7,568	1.8%	7,618	1.7%	9,631	2.0%	13,204	3.2%	45,087	2.1%
46~60일	6,194	1.6%	5,774	1.3%	5,673	1.3%	7,718	1.6%	9,541	2.3%	34,900	1.6%
61~90일	9,834	2.6%	10,488	2.4%	9,404	2.1%	10,246	2.2%	15,896	3.9%	55,868	2.6%
91~120일	7,557	2.0%	9,404	2.2%	7,685	1.7%	7,616	1.6%	13,831	3.4%	46,093	2.2%
121~365일	79,919	21.1%	88,302	20.5%	75,357	17.0%	83,581	17.7%	82,330	20.2%	409,489	19.2%
366~730일	99,649	26.4%	96,030	22.3%	83,223	18.7%	109,640	23.2%	11,049	2.7%	399,591	18.7%
731일이상	33,561	8.9%	45,565	10.6%	34,360	7.7%	6,784	1.4%	-	0.0%	120,270	5.6%
총합계	378,104	100.0%	430,333	100.0%	444,243	100.0%	472,603	100.0%	407,894	100.0%	2,133,177	100.0%
15일 이내	33.3%		36.2%		47.2%		47.1%		60.0%		45.0%	
120일 이상	56.4%		53.4%		43.4%		42.3%		22.9%		43.6%	

- 수입의 경우, 란별 정정차수를 활용하여 분석하며, 대부분 2회차에서 모든 것이 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98.5%)

[표 3-22] 정정차수별 비율

정정차수	빈도	비율
0	804,448	37.7%
1	1,156,594	54.2%
2	140,100	6.6%
3	23,558	1.1%
4	7,174	0.3%
5	1,074	0.1%
6	168	0.0%
7	25	0.0%
8	12	0.0%
9	6	0.0%
10	12	0.0%
11	3	0.0%
12	1	0.0%
13	1	0.0%
17	1	0.0%
	<b>2,133,177</b>	<b>100.0%</b>
2번이내 수정		<b>98.5%</b>

- 정정기간이 120일 이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HS코드 85(전기기, TV, VTR), 84(보일러, 기계류), 62(의류(편물제이외)), 61(의류(편물제)) 순으로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남

[표 3-23] 정정기간이 120일 이상인 품목별 비율

품 목	건수	비율
85   전기기기, TV, VTR	160,671	17.3%
84   보일러, 기계류	115,945	12.5%
62   의류(편물제이외)	87,001	9.4%
61   의류(편물제)	55,992	6.0%
33   향료, 화장품	39,291	4.2%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6,428	3.9%
87   일반차량	35,161	3.8%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31,717	3.4%
64   신발류	28,754	3.1%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25,618	2.8%
계	616,578	66.3%



- 수입자료 정정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전체의 10.6%가 모델/규격의 정정, 7.9%가 금액, 7.5%가 단가, 5.3%가 수량 등으로 대부분이 수입금액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타남
- 수입정정내역 비율이 높음 10개 부문에 대한 비율이 전체의 55.4%로 나타남

[표 3-24] 정정내역별 비율

정정코드	정정내역	건수	비율
32	모델·규격	1,337,863	10.6%
36	금액	1,000,051	7.9%
35	단가	940,817	7.5%
34	수량	665,971	5.3%
45A	수입요건 확인/세율추천번호	511,161	4.1%
34A	단위	508,794	4.0%
45B	수입요건 확인/세율추천발급일자	506,400	4.0%
45D	수입요건 확인/세율추천통관수량	505,325	4.0%
45	수입요건 확인/세율추천서류구분	503,046	4.0%
45C	수입요건 확인/세율추천법령코드	502,728	4.0%

## 제2절 신고수리일과 출항일기준 통계간의 차이 분석

### 1. 분석방법

□ 수출신고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무역통계와 출항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수출액 간의 오차를 분석함

- 현재 '무역통계'로 발표되는 자료는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의 발표자료로 인용되며, 이후 관세무역개발연구원, 무역협회 등의 수출관련 무역통계도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함

- 수출입물류통계는 출항일 기준으로 작성되며, 출항일 기준 수출액은 보조지표로 관세청 보도자료에 신고수리일 기준 자료와 함께 공표됨

□ 본 분석에서는 관세청에서 전달받은 출항일 기준 수출액을 수출신고일 기준 수출액과 비교하여 두 데이터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함

- 신고수리일기준은 신고수리 후 익일 통계집계가 가능하나 출항일 기준은 출항 후 익일 24:00시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함에 따라 통계집계가 추가적으로 1일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통계의 적시성 저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지연을 야기할 우려로 인해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왔으며, 출항일은 보조통계로 활용하여 왔음

※ 2012년부터 출항 적하목록을 24시간 전까지 제출함에 따라 통계집계 지연 없음

### 2. 분석 결과

□ 2007~11년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은 총 243개국으로, 이 중에 동 기간 신고수리일 기준 수출액과 출항일 기준 수출액이 일치하는 경우는 36개국에 불과함

- 기준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수출액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우 4년간 누적 수출액이 평균 약 7.5억달러로 소규모 수출이 있었던 국가였다는 점이 오차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로 풀이됨

□ 반면 신고수리일 기준 수출액이 출항일에 비해 과다 산정된 경우(+)는 164개국이며 출항일 기준 수출액이 더 큰 경우는 43개국이 존재함

- 2007~11년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신고수리일>출항일)인 경우의 누적 오차는 약 131.9억 달러이고(신고수리일<출항일)인 경우의 누적 오차는 7.6억 달러로 총 누적오차는 124.4억 달러로 나타남

[표 3-25] 신고수리일과 출항일기준 수출액 오차(2007~2011)

(단위: 백만 달러)

기준	국가수	오차누적 (신고수리일-출항일)
신고수리일 > 출항일	164	13,194.0
신고수리일 < 출항일	43	-750.7
신고수리일 = 출항일	36	0.0
총합계	243	12,443.3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누적 오차를 기준으로 양의 오차를 기록한 상위 10개국과 음의 오차를 기록한 상위 10개국은 아래 표에 정리됨

- 누적오차가 음(+)의 값을 가지는 국가들은 주로 미국, 캐나다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반면에 누적오차가 음(-)의 값을 가지는 국가는 주로 우리나라 수출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 나타남

[표 3-26] 누적오차 기준 상·하위 10개국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누적오차 > 0 상위 10개국				
국가	수리일 수출액	출항일 수출액	누적오차 (수리일-출항일)	오차율
US	235,816.3	234,586.6	1,229.8	0.5
CN	511,100.2	509,965.7	1,134.5	0.2
PA	21,937.1	20,946.6	990.5	4.5
LR	22,988.1	22,000.6	987.5	4.3
AU	29,911.1	29,223.5	687.6	2.3
CH	2,724.2	2,055.9	668.3	24.5
MT	8,044.4	7,439.8	604.7	7.5
SG	77,942.7	77,412.6	530.0	0.7
JP	144,249.5	143,762.5	487.0	0.3
RU	40,094.5	39,672.5	422.0	1.1
누적오차 < 0 상위 10개국				
국가	수리일 수출액	출항일 수출액	누적오차 (수리일-출항일)	오차율
GR	8,836.0	9,027.1	-191.1	-2.2
BM	6,071.4	6,233.9	-162.5	-2.7
BS	7,237.9	7,381.7	-143.8	-2.0
GB	27,126.9	27,214.2	-87.3	-0.3
ES	12,568.9	12,621.0	-52.2	-0.4
LV	628.7	657.5	-28.8	-4.6
ZZ	1,454.1	1,481.8	-27.7	-1.9
NL	25,355.0	25,370.7	-15.7	-0.1
PK	3,846.5	3,857.4	-10.9	-0.3
CU	744.2	755.0	-10.8	-1.5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월별로 살펴본 오차율은 6월과 12월에 각각 3.5%와 3.8%로 다른 달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7~11년 기간 가장 높은 오차율을 보인 달은 2월로 4.0%의 오차율을 기록하여 신고일 기준 수출액이 선적일 기준에 비해 약 4%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월의 높은 오차율은 2010년 2월에 10.1%라는 매우 높은 오차율을 기록한 것이 주요 이유가 되며 2010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의 경우 양과 음의 오차율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남

- 6월의 경우 2008년과 2011년에 각각 -1.7%와 -0.1%의 음의 오차율을 보인 바 있으나 2007년, 2009년 및 2010년에는 각각 6.4%, 7.6% 그리고 6.6%의 높은 양의 오차율을 보임
- 12월 오차율도 2007년의 -1.2%를 제외하고는 6.0%, 6.6%, 5.9% 및 2.0%의 오차율을 기록함

[표 3-27] 신고수리일과 출항일기준 수출액 오차 : 월별(2007~2011)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1월	-3.2%	-3.5%	-8.4%	-8.2%	0.5%	-3.9%
2월	1.5%	5.1%	3.2%	10.1%	-0.1%	4.0%
3월	0.5%	-3.3%	-7.8%	-4.2%	1.8%	-2.2%
4월	2.5%	3.6%	7.7%	4.9%	-1.3%	3.1%
5월	2.8%	4.7%	-3.9%	-0.2%	1.6%	1.3%
<b>6월</b>	<b>6.4%</b>	<b>-1.7%</b>	<b>7.6%</b>	<b>6.6%</b>	<b>-0.1%</b>	<b>3.5%</b>
7월	-6.3%	-2.6%	1.2%	-6.7%	-2.5%	-3.4%
8월	4.4%	-0.7%	-6.9%	-4.2%	3.7%	-0.4%
9월	-6.1%	3.0%	4.9%	4.5%	3.5%	2.4%
10월	-1.2%	-3.2%	-0.3%	0.4%	-5.9%	-2.2%
11월	3.8%	1.6%	-1.5%	-1.7%	1.6%	0.7%
<b>12월</b>	<b>-1.2%</b>	<b>6.0%</b>	<b>6.6%</b>	<b>5.9%</b>	<b>2.0%</b>	<b>3.8%</b>
총합계	0.4%	0.6%	0.6%	0.8%	0.4%	0.6%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 특히, 2010년 2월 신고수리일 기준의 수출액 오차가 10.1% 차이가 나는 것은 선박이 26억 달러가 감소함에 따른 결과임

[참고] 2010년 2월 신고수리일, 출항일 기준 금액 차이 상위 5개 품목

HSK	수리일	출항일	차이	비율
89 선박	4,612.8	2,045.3	2,567.5	55.7%
27 광료성 연료에너지	2,081.4	1,912.0	169.4	8.1%
29 유기화합물	1,315.5	1,203.6	111.9	8.5%
72 철강	1,370.3	1,279.7	90.6	6.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711.0	1,623.6	87.4	5.1%

### 제3절 국가 간 무역데이터 차이 비교

- 논리적으로 자국의 수출데이터는 수출상대국의 수입데이터와 일치해야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둘 간의 오차가 발생함
  - 양자 간 교역데이터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물품에 대한 가치평가 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들 수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반면에 수입은 CIF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됨으로 동일한 제품이 수출되는 경우에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에 차이를 가져옴
    - 품목에 따라 FOB 가격과 CIF 가격의 격차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둘 사이에 약 5% 이내의 오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환율이나 운송기간에 따른 시차도 국가 간 교역데이터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 이는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거나 시기적으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같이 환율 변동성이 높았던 기간에 이루어진 수출의 경우 오차가 클 수 있음
  -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는 3국 경유에 따른 교역데이터 불일치가 발생 가능함
    -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홍콩으로 수출을 할 경우, 홍콩의 중간유통업자가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중국으로 특별한 가공 없이 수출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수출 당시 수출국이 홍콩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원산지가 ‘한국’으로 분류됨에 따라 한국 수입품목으로 수입액이 집계됨
    - 이러한 유형의 오차는 홍콩, 중국, 네델란드와 같이 중간교역이 활발한 지역 및 이들 지역에 근접한 지역과의 교역에서 빈번히 발생함
  - 이러한 정상적인 그리고 불가피한 원인에 의한 오차 발생 외에도 수출금액 입력 오류에 따른 오차 발생이나 환적 및 중계무역시 원산지 변경 후 제3국으로 반송되는 경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수출/수입액의 오표시 등은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차이로 분류함

[표 3-28] 무역데이터의 국가 간 오차 발생원인

구 분	원 인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차이	①수출입금액 집계기준(CIF/FOB)에 의한 차이 ②제3국 경유에 의한 차이 ③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상이로 인한 차이 ④국가별 품목분류 기준 상이로 인한 차이 ⑤운송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차이 ⑥특수거래형태의 통계 포함여부에 따른 차이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차이	⑦수출입 금액의 입력오류에 따른 차이 ⑧환적/중계무역시 원산지 변경 후 제3국 반송으로 인한 차이 ⑨저가수출·고가수입 신고 등 불법행위에 따른 차이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본 절에서는 이러한 국가 간의 교역데이터 오차를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중국, 미국, 일본 및 EU)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데이터의 오차를 주요국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비교하고, 오차 발생 원인을 품목별로 살펴봄<sup>3)</sup>

### 1. 주요국의 수출입데이터

□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및 EU가 제공하는 교역데이터는 모두 수입액은 CIF 가격으로 그리고 수출액은 FOB 가격에 기초하여 작성됨

- 우리나라는 관세청에서 수집된 교역데이터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위탁받아 용도에 맞게 가공 혹은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관세청 등에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

3) EU의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교역데이터는 모두 유로화를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어 교역차이 분석이 불가함. 또한 일본은 총 교역액은 달러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치가 존재하지만 달러기준 품목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의 품목별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 미국의 교역자료는 미국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달러화가 교역에서 주요 통화수단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환율 변동에 따른 오차는 매우 미미함
- 일본은 JETRO에서 미화로 표시된 교역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국가별 수출입 총액만 달러로 제공되며 품목별 교역액은 엔화로만 접근 가능함
- 27개국으로 이루어진 EU의 교역통계는 EU의 EuroStat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EuroStat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품목별 교역액뿐만 아니라 교역 총액도 유로화로만 제공됨
- 중국은 중국해관을 통해 공식 교역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의 품목별 교역액은 별도의 자료비를 받고 제공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품목별 교역데이터는 중국 해관에서 구입한 자료 일부와 무역협회가 중국해관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및 EU 간의 2007~11년 기간의 교역데이터는 아래 표에 정리됨

- 각 국가의 공식 통계자료 혹은 KITA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됨

[표 3-29] 한국의 수출입 통계 : 중국, 미국, 일본 및 EU

(단위: 백만 달러)

대상국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수출	81,985	91,389	86,703	116,838	134,185
	수입	63,028	76,930	54,246	71,574	86,426
미국	수출	45,766	46,377	37,650	49,816	56,208
	수입	37,219	38,365	29,039	40,403	44,567
일본	수출	26,370	28,252	21,771	28,176	39,680
	수입	56,250	60,956	49,428	64,296	68,302
EU	수출	55,982	58,375	46,608	53,507	55,727
	수입	36,824	39,981	32,232	38,721	47,424

자료: www.kita.net



[표 3-30] 중국의 수출입 통계 : 한국, 미국, 일본 및 EU

(단위: 백만 달러)

대상국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수출	56,141	73,951	53,680	68,771	82,924
	수입	103,752	112,138	102,545	138,307	162,709
미국	수출	232,704	252,297	220,816	283,304	324,493
	수입	69,419	81,361	77,460	102,015	122,154
일본	수출	102,071	116,134	97,911	121,061	148,298
	수입	133,950	150,600	130,915	176,694	194,591
EU	수출	245,230	292,959	236,275	311,256	355,950
	수입	111,043	132,854	127,856	168,437	211,187

주1: 한국, 미국, 일본 2007-2010년 수입 KIEP가 구입한 해관데이터

주2: 한국, 미국, 일본 2007-2011년 수출과 2011년 수입 해관총서 웹사이트

주3: EU 2007-2011년 수출입 KITA 중국무역통계에서 27개국 합한 값

[표 3-31] 미국의 수출입 통계 : 한국, 중국, 일본 및 EU

(단위: 백만 달러)

대상국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수출	34,402	34,669	28,612	38,846	43,505
	수입	47,562	48,069	39,216	48,875	56,636
중국	수출	62,937	69,733	69,497	91,881	103,879
	수입	321,443	337,773	296,374	364,944	399,335
일본	수출	61,160	65,142	51,134	60,486	66,168
	수입	145,463	139,262	95,804	120,545	128,811
EU	수출	244,166	271,810	220,599	239,583	268,635
	수입	354,409	367,617	281,801	319,195	367,799

자료: 미국통계청

[표 3-32] 일본의 수출입 통계 : 한국, 중국, 미국 및 EU

(단위: 백만 달러)

대상국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수출	54,199	58,985	47,248	62,054	65,863
	수입	27,252	29,248	21,997	28,542	39,702
중국	수출	109,060	124,035	109,630	149,086	161,467
	수입	127,644	142,337	122,545	152,801	183,487
미국	수출	143,383	136,200	93,653	118,199	125,673
	수입	70,836	77,018	59,044	67,171	74,231
EU	수출	105,270	109,383	72,374	86,735	95,411
	수입	65,009	69,915	59,130	66,187	80,287

자료: JETRO (<http://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

## 2. 수출입 교역데이터 차이

### 2-1)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교역데이터 오차 비교

- 아래 표는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 미국, 일본과의 교역데이터 상의 오차를 요약함
  
- 먼저 한국수출액과 상대국의 수입액 간의 오차는 2007~11년 기간에 국가별로 적게는 2천2백만 달러에서 최대 285.2억 달러의 차이를 보임
  
- 대중국 수출에서 한국의 수출데이터와 중국의 수입데이터는 2007년 217.7억 달러에서 2011년 285.2억 달러로 증가함
  - 2007년 217.7억 달러를 기록했던 양국 간 교역데이터 간의 오차는 2008년과 2009년에 다소 줄어들었으나 2010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285.2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오차가 발생함
  - 이러한 오차는 우리나라 총 수출을 기준으로 한 오차 비중을 계산했을 때, 약 18~27%에 이룸
    - 총수출액 대비 오차비중은 2007년 26.5%로 가장 높았고 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20%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 다시 21.3%를 기록함
  
- 반면에 대미 그리고 대일본 수출에서 우리나라 수출데이터와 미국, 일본의 수입데이터 간의 오차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07년 18.0억 달러이던 대미 교역데이터 오차는 2011년에는 4.3억 달러로 3/4 이상 감소하였고 총수출액 대비 교역오차도 같은 기간 3.9%에서 0.8%까지 감소함
  - 대일본 교역에서의 교역데이터 오차도 2007년 8.8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2천2백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한국의 총수출 대비 교역오차 비중도 2011년에 0.1%까지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0.1% 오차는 FOB/CIF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차이(-3~6%)를 벗어나는 것으로 FOB와 CIF 차이가 교역데이터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환율이나 여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양(+의 효과에 의해 상쇄되면서 최종적으로 0.1% 오차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됨

□ 우리나라 수입데이터와 상대국의 수출데이터(상대국 수출액 - 한국 수입액) 간의 오차는 수출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수출액과 우리나라 수입액과의 오차는 2007년 68.9억 달러로 중국 총수출액 대비 12.3%의 오차를 기록하였으나 이후에는 오차비중은 4%대로 급격히 감소함
- 미국 총수출액에서 우리나라 수입액을 뺀 우리나라 대미수입에서의 차이는 2008년에 1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에 2.4% 미만의 오차 범위를 보임
- 대일본 수입에서의 오차 비중은 2007~11년 동안 약 3.3%~4.6%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록을 보임

[표 3-33]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데이터 오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수출 (한국수출액 -상대국수입액)	중국	-21,767 -26.5%	-20,749 -22.7%	-15,842 -18.3%	-21,469 -18.4%	-28,524 -21.3%
	미국	-1,796 -3.9%	-1,692 -3.6%	-1,566 -4.2%	941 1.9%	-428 -0.8%
	일본	-882 -3.3%	-996 -3.5%	-226 -1.0%	-366 -1.3%	-22 -0.1%
한국수입 (상대국수출액 -한국수입액)	중국	-6,887 -12.3%	-2,979 -4.0%	-566 -1.1%	-2,803 -4.1%	-3,502 -4.2%
	미국	-2,817 -8.2%	-3,696 -10.7%	-427 -1.5%	-1,557 -4.0%	-1,062 -2.4%
	일본	-2,051 -3.8%	-1,971 -3.3%	-2,180 -4.6%	-2,242 -3.6%	-2,439 -3.7%

자료: 각국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 중국의 교역데이터는 한국, 미국, 일본이 가진 교역데이터와 매우 높은 오차를 기록함

-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과 미국의 수입액은 2007~09년 중국 수출액 대비 30% 이상의 높은 오차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 23.1%로 다소 감소였으나, 여전히 높은 오차를 기록하고 있음

- 일본에 대한 수출에서도 중국의 수출액은 일본의 수입액에 비해 20%대 중반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수입에서도 수출국의 수출액과 중국의 수입액 사이의 오차는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출액 대비 높은 오차 비율을 가짐

□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높은 데이터 불일치를 보이는 것에는 중국 관세청의 시스템의 문제나 불투명한 관세행정, 그리고 홍콩을 통한 교역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 있는 국가 중, 중국은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행정에서 후진국으로 정보수집 및 관리에서 시스템상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음

- 또한 불합리한 관행과 불투명한 절차 등으로 인해 교역데이터의 누락이나 under-value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음

- 특히 중국령으로 분류되는 홍콩의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3국을 통한 교역으로 인해 많은 오차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표 3-34]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데이터 오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수출 (중국수출액 -상대국수입액)	한국	-6,887 -12.3%	-2,979 -4.0%	-566 -1.1%	-2,803 -4.1%	-28,524 -4.2%
	미국	-88,739 -38.1%	-85,476 -33.9%	-75,558 -34.2%	-81,640 -28.8%	-74,842 -23.1%
	일본	-25,573 -25.1%	-26,203 -22.6%	-24,634 -25.2%	-31,740 -26.2%	-35,189 -23.7%
중국수입 (상대국수출액 -중국수입액)	한국	-21,767 -26.5%	-20,749 -22.7%	-15,842 -18.3%	-21,469 -18.4%	-28,524 -21.3%
	미국	-6,482 -10.3%	-11,628 -16.7%	-7,963 -11.5%	-10,134 -11.0%	-18,275 -17.6%
	일본	-24,890 -22.8%	-26,565 -21.4%	-21,285 -19.4%	-27,608 -18.5%	-33,124 -20.5%

자료: 각국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 미국과 일본은 미국수출과 수입에서 오차 범위가 극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미국 수출액에서 일본의 대미국 수입을 뺀 오차의 경우, 미국 수출액은 10% 이상 높은 데이터를 가지는 반면에 일본의 대미국 수출액에서 미국의 대일본 수입액의 차이는 일본 수출액 대비 2% 내외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표 3-35]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데이터 오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수출 (미국수출액 -상대국수입액)	한국	-2,817 -8.2%	-3,696 -10.7%	-427 -1.5%	-1,557 -4.0%	-28,524 -2.4%
	중국	-6,482 -10.3%	-11,628 -16.7%	-7,963 -11.5%	-10,134 -11.0%	-18,275 -17.6%
	일본	-9,676 -15.8%	-11,876 -18.2%	-7,910 -15.5%	-6,685 -11.1%	-8,063 -12.2%
미국수입 (상대국수출액 -미국수입액)	한국	-1,796 -3.9%	-1,692 -3.6%	-1,566 -4.2%	941 1.9%	-428 -0.8%
	중국	-88,739 -38.1%	-85,476 -33.9%	-75,558 -34.2%	-81,640 -28.8%	-74,842 -23.1%
	일본	-2,080 -1.5%	-3,062 -2.2%	-2,151 -2.3%	-2,346 -2.0%	-3,138 -2.5%

자료: 각국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표 3-36] 일본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데이터 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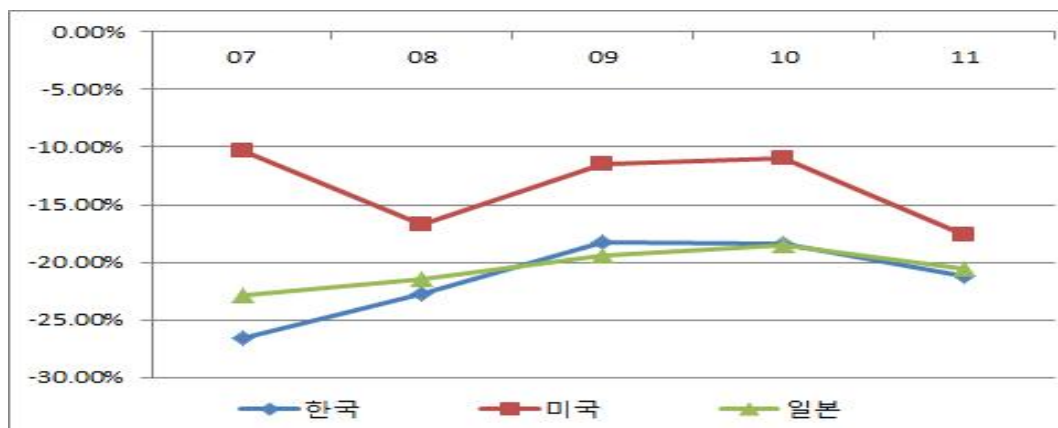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본수출 (일본수출액 -상대국수입액)	한국	-2,051 -3.8%	-1,971 -3.3%	-2,180 -4.6%	-2,242 -3.6%	-28,524 -3.7%
	중국	-24,890 -22.8%	-26,565 -21.4%	-21,285 -19.4%	-27,608 -18.5%	-33,124 -20.5%
	미국	-2,080 -1.5%	-3,062 -2.2%	-2,151 -2.3%	-2,346 -2.0%	-3,138 -2.5%
일본수입 (상대국수출액 -일본수입액)	한국	-882 -3.3%	-996 -3.5%	-226 -1.0%	-366 -1.3%	-22 -0.1%
	중국	-25,573 -25.1%	-26,203 -22.6%	-24,634 -25.2%	-31,740 -26.2%	-35,189 -23.7%
	미국	-9,676 -15.8%	-11,876 -18.2%	-7,910 -15.5%	-6,685 -11.1%	-8,063 -12.2%

자료: 각국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 한국, 미국, 중국 및 일본의 4개국 간의 교역데이터를 비교하면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출국의 데이터와 수입국의 데이터의 오차가 크다는 점은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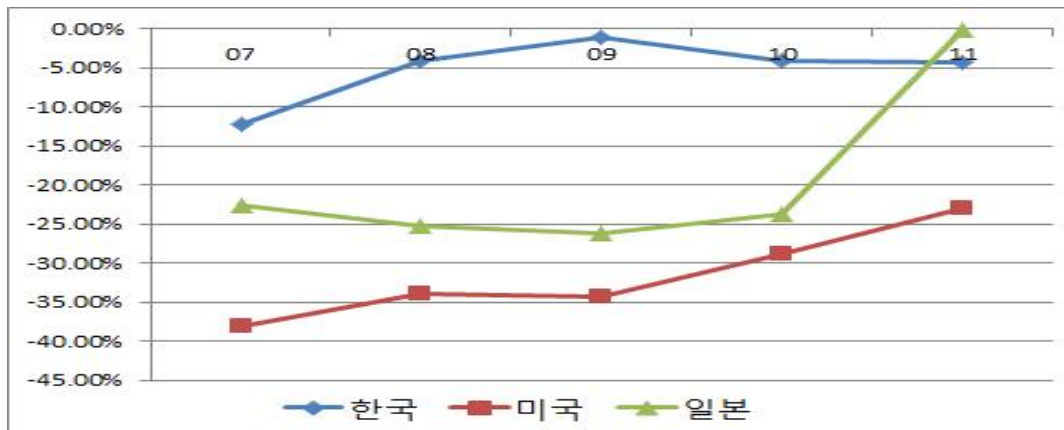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을 기준으로 자국 수출에서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게 20% 내외의 오차를 보이는 반면에, 미국은 주로 약 10%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나 2011년 오차 비율이 크게 늘어난 특징을 보임



[그림 3-3] 한국·미국·일본의 대중국 수출액 오차비율 :  
(자국수출액-중국수입액)/자국수출액

자료: 각국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 반면에 각국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오차 측정에는 중국 수출액 대비 오차 범위가 대미국 수입에서 중국 데이터와 미국 데이터 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이 2011년 오차 비중이 한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한국의 오차 비중이 이들 3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3-4] 한국·미국·일본의 대중국 수입액 오차비율 :  
(중국수출액-자국수입액)/중국수출액

자료: 각국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오차는 양국 간 통상논의에서 주요 의제가 됨
- 즉,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게 환율절상 등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적자를 활용하지만, 양국 간 무역적자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 차이로 양국 간 통상마찰의 원인이 됨

[표 3-37] 미국 및 중국 데이터에 기초한 양자 간 무역수지 비교 : 2007~2011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데이터에 따른 대미 무역흑자 규모 (A)	163,285	170,936	143,356	181,289	202,339
미국데이터에 따른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 (B)	258,506	268,040	226,877	273,063	295,456
차이 (A)-(B)	-95,221	-97,104	-83,521	-91,774	-93,117

자료: 각국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 2-2) EU의 교역데이터 비교

□ EU의 통계청 격인 EuroStat가 발표하는 EU 교역데이터는 Euro 기준으로 작성되어 발표되며, 달러로 전환한 공식 교역자료를 발표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소절에서 이용하는 교역데이터는 EuroStat에서 발표한 Euro에 기초한 교역액을 연평균 환율을 이용하여 EU의 교역액을 추정함

· 환율은 <http://www.oanda.com/currency/average>에서 제공하는 연평균 환율을 이용하여 산정함

- 본 연구의 목적이 EU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 오차가 EU의 여타 주요 교역국과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 있는 바, 동 연구에서는 EuroStat의 통계를 연평균 환율로 전환하여 상대국 무역통계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함

□ 연평균 환율로 전환한 EU의 교역은 아래 표에 정리됨

- EU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2007년 338.7억 달러에서 2011년 452.1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66.6억 달러에서 502.9억 달러로 감소함

[표 3-38] EU의 수출입 통계 : 중국, 일본, 미국 및 한국

(단위: 백만 달러)

대상국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중국	수출	98,402.3	115,111.6	114,794.4	150,419.4	189,764.0
	수입	318,872.6	364,681.0	298,656.8	375,168.8	407,114.0
일본	수출	59,791.3	62,000.5	50,079.3	58,352.2	68,259.9
	수입	107,452.9	110,381.9	79,555.7	89,319.4	96,303.1
미국	수출	355,299.2	364,265.3	283,623.5	321,777.6	363,245.3
	수입	238,684.5	264,152.1	211,823.3	229,754.4	265,346.5
한국	수출	33,869.0	37,504.7	30,105.0	37,098.6	45,205.7
	수입	56,664.4	58,172.8	45,007.6	52,314.1	50,287.5

자료: EuroStat 자료를 연평균 환율을 이용하여 산정



- 동 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 일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EU와의 교역액을 비교함
- 전반적으로 EU의 주요 교역상대국 중, 중국과의 교역에서 오차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에서 EU 수출액과 중국 수입액 간의 오차는 -5.2~-6.1%를 기록하였고 중국 수출액과 EU 수입액 사이에는 -11.3%~-15.4%의 오차를 보임
    - EU 수출의 경우, 오차범위가 5% 내외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국 수출액과 EU 수입액 간의 오차는 10% 이상 큰 오차를 기록함
  - 대일본 교역에서는 EU 수출과 일본 수입액 간의 차이는 매우 작은 반면 일본 수출액과 EU 수입액 사이에는 큰 오차를 보임
    - 2008년도 일본의 수출액과 EU 수입데이터 간에는 무려 18.1%라는 큰 오차를 기록하였고 2007년을 제외하고는 일본 수출액과 EU 수입액 사이에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함
  - 자국 수출액이 상대국 수입액보다 작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상대국 수입액보다 자국 수출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
    - EU 수출액과 미국 수입액은 +1.2%~4.1%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수출액과 EU 수입액 간의 차이도 2008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양(+)의 값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EU 수출과 우리나라 수입데이터 간에 2007년을 제외하고는 양(+)의 값을 보임
    - 2011년에는 EU 수출액과 우리나라 수입액 사이에 9.8%라는 큰 격차를 보임
    - 우리나라 수출액과 EU 수입액 차이는 -4.4%~-8.7%의 차이를 보이며 2007년 이후 그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9] EU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교역데이터 오차

(단위: 백만 달러, %)

	상대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EU수출 -상대국수입	중국	-12,641	-17,742	-13,062	-18,018	-21,423
		-5.2%	-6.1%	-5.5%	-5.8%	-6.0%
	일본	-2,183	-999	-7,182	-2,584	-892
		-2.1%	-0.9%	-9.9%	-3.0%	-0.9%
	미국	5,481.5	7,657.9	8,775.7	9,828.6	3,288.5
		2.2%	2.8%	4.0%	4.1%	1.2%
	한국	-682	202.2	1,600.4	1,192.9	5,439.5
		-1.2%	0.3%	3.4%	2.2%	9.8%
상대국수출액 -EU수입액	중국	-12,641	-17,742	-13,062	-18,018	-21,423
		-12.8%	-15.4%	-11.4%	-12.0%	-11.3%
	일본	-5,218	-7,915	-9,051	-7,835	-12,027
		-8.7%	-12.8%	-18.1%	-13.4%	-17.6%
	미국	890	-3,352	1,823	2,583	-4,554
		0.3%	-0.9%	0.6%	0.8%	-1.3%
	한국	-2,955	-2,476	-2,127	-1,622	-2,218
		-8.7%	-6.6%	-7.1%	-4.4%	-4.9%

자료: 각국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 전반적으로 EU와 EU 주요교역국 간의 교역데이터 차이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데이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과 EU 간 교역에서 보다는 큰 차이를 보임
- 그러나 EU 수출데이터와 우리나라 수입데이터 간에 양(+)의 값을 가지는 것과 그 차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사항으로 지적됨
- 동 분석은 연평균 환율을 이용하여 추정된 자료를 이용한 결과로 차이의 절대값 보다는 상대적인 격차의 범위에 의미가 있음

#### 제4절 무역통계와 수출입물류통계의 통합 가능성 검토

- 무역통계와 수출입물류통계는 관세청의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에서 작성하는 승인통계임
- 무역통계와 수출입물류통계는 모두 수출입신고서와 신고인이 세관에 전산(EDI, 인터넷) 신고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임
  - [표 3-37]에서 보듯이 두 통계는 모두 세관 신고에 의해 작성되며, 수출입 물품의 물량 및 금액, 원산지, 수출국 등에 대하여 신고 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통계
  - 무역통계는 수출입신고서를 기반으로 작성
  - 수출입물류통계는 수출입적하목록을 기반으로 작성

[표 3-40] 무역통계와 수출입물류통계의 개요

구 분	무역통계	수출입물류통계
작성목적	국가별, 상품별 수출입 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무역정책 및 관세정책수립에 활용	수출입물류의 처리실적 및 국내외의 이동경로 파악 목적
작성주기	월	년
보고방법	수출입신고서를 신고인(관세사)이 세관에 전산(EDI, 인터넷) 신고	수출입적하목록 등을 신고인이 세관에 전산(EDI)신고
작성사항	재원별 및 형태별, 기본항목별, 상품종류별, 세관별, 국별, 상품별 및 국별 수출입, 농축수산물 수입동향(농축산물 수입 가격지수 포함)	수출입 물품의 물량 등
작성체계	수출입업체 및 대행자 → 세관 → 관세청	수출입업체 및 대행자 → 세관 → 관세청

- 두 통계의 최종 보고서의 형식은 다르게 작성되고 있으나, 무역통계는 국가별, 품목별, 수량, 금액을 주로 작성하고 있으며 수출입물류통계는 국가별, 품목별, 중량 등을 작성하고 있음

- 관세청의 홈페이지에 무역통계 배너([그림 3-5] 참조)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통계 배너를 클릭하면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로 이동([그림 3-6] 참조)하게 되며, 사이트에서 무역통계 및 수출입물류통계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림 3-5] 관세청 홈페이지

- 또한,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용도에 따라 자료를 한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보고서는 무역통계는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는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공동으로 작성하여([그림3-7] 무역통계연보와 수출입물류통계연보 참조) 각각 제공하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판매 및 관리를 하고 있음



[그림 3-6] 무역통계 배너 클릭 후 화면

- 우리나라에 수출입 된 품목의 금액 중심의 통계(무역통계)와 물류의 이동경로 중심의 통계(수출입물류통계)로 나누어짐



[그림 3-7] 무역통계연보 및 수출입물류통계연보 보고서

- 무역과 물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통계는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나, 실제로 통계의 작성 형태를 파악한 결과, 두 통계는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음

□ 먼저, 관세청의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르면 무역통계 작성시 제외되는 물품이 존재함

- 특히, 그 중에서도 7항의 중계무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 8항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송되는 물품 등은 무역통계에 수출입으로 잡히지 않음
- 그러나, 수출입물류통계에서는 고시 제3-2조(통과무역통계)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항만이나 보세구역에 일시 양륙한 후 적재하거나, 양륙하지 않고 다른 운송수단에 이적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 제3-3조(중계무역) 수출통관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또는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은 수출입 물류통계에 계상됨
-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통계에는 계상되지 않으나, 수출입물류통계에는 계상되는 부분이 존재함

□ 수출입물류통계를 검토한 결과, 통계작성 목적에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작성 되면 또한, 활용분야가 다름에 따라 통합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수출입물류통계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자료의 업데이트는 전월자료를 익월 공휴일\*을 활용하여 업데이트 실시

\* 익월의 15일 이전 공휴일을 이용하여 업데이트

\*\* 적하목록이 정정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 이전자료까지 함께 업데이트 함



[그림 3-8] 수출입물류통계 월간발표

□ 하지만, 수출입물류통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

- 첫째, 수출입물류통계는 현재 연간으로 승인되었으나, 매월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작성주기를 월간으로 변경승인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수출입신고수리를 기준으로 작성한 PART B 부분에 총괄표를 작성하여 이용자 편의성 도모 필요
  - 보고서는 PART A와 PART B로 나누어져 있으며, PART A는 수출(출항일기준), 수입(입항일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환적화물까지 포함하여 연도별 수출입 화물실적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PART B의 경우, 수출입신고 수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연도별 신고수리기준 수출입화물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통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통계의 세부적인 사항도 필요하지만 개괄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가 필요함
- 셋째, 보고서의 일러두기에 무역통계와의 차이점 및 어떤 부분(고시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통계임을 추가하여 설명
-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3-2조, 제3-3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 제5절 기타 분석결과

### □ 출항일 기준 통계작성의 필요성

- 통계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와 정책수립의 평가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통계가 있다 또한, 기초자료 활용 및 정책수립의 평가를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기도 함
- 무역통계는 현재 두 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생기는 오류와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계가 작성되고 있음
  - 지식경제부의 잠정치와 관세청의 확정치 모두가 정확한 자료라기보다는 현재 까지 정정된 자료에 불과함
- 지식경제부는 현행대로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발표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유지하며, 관세청은 통계의 정확성과 정책수립의 평가 차원에서 출항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식경제부의 신고수리일 자료는 단기 수출입전망을 예측 및 분석함으로써 수출입의 적시성을 확보
  - 관세청은 정책수립, 기업, 연구기관의 경제분석 등을 위한 최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출항일 기준으로 작성
- UN(무역통계위원회)은 출항일 기준으로 수출통계 계상을 권고하고 있음

#### □ UN 국제상품 무역통계(2010)

##### 제1장 (기록범위 및 시점)

1.8(기록시점) 일반적 기준으로 상품이 일국의 경제영역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통계에 계상하도록 권고한다.

- 현재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에도 수출은 출항일(선적일)기준으로 통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 단, 신고수리일기준을 출항일기준으로 변경시 생기는 혼란에 대하여 양 기관에서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홍보 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과거자료에 대해 출항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임

#### □ 용어정리의 필요성

- 현재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통계에 대한 용어를 혼용하고 쓰고 있으며, 자료에 대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내용을 검토하였음

- 지식경제부에 대한 용어 정리 필요

- 지식경제부는 1일자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2년 4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 **전체 수출입 실적은 4월 30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 **품목별·지역별 수출입 실적은 4월 20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됨
- 다만,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 추이는 지식경제부 품목담당과 검토를 토대로 **월간 수출액을 추정**하여 작성

- 지식경제부 익월 1일 발표자료는 관세청의 말일까지는 전체 수출입실적은 신고수리기준일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품목별·지역별 자료는 20일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발표함

- 지식경제부의 자료는 수출입신고수리일기준의 자료를 정정 등의 사항을 일부 반영한 자료로 통관실적 잠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고수리기준일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통관실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는 잠정치자료를 활용하여 가공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방향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관세청은 분명 신고수리일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및 가공을 하는 지식경제부로서는 통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신고수리

일기준 집계치(속보치)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관세청에서 연간자료를 확정 전까지는 무역자료가 매월 수정됨에 따라서 무역협회(지식경제부에서 자료제공)자료도 매월 수정되고 있는데, 무역협회도 관세청과 같이 자료의 정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함

- 관세청에 대한 용어정리 필요

- 지식경제부의 용어를 신고수리기준일 집계치(속보치)로 수정하면 관세청은 익월 15일에 발표하는 자료를 신고수리기준일 잠정치로 용어를 쓰고 연간자료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주석을 통해 계속 자료가 정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임
- 확정치란 더 이상의 정정이 필요치 않은 정확한 자료일 때 쓰는 용어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보도일시	6월 15일(금)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자	강경훈 사무관, 이태훈 주무관 (042-481-7845,7847)

## 2012년 5월 수출입 동향(확정치)

\* 세부통계는 관세청 홈페이지 '무역통계조회' 코너에서 제공중

[그림 3-9] 관세청 보도자료 화면

- 또한, 통계자료를 제공한 DB에 어떠한 언급도 없이 매월 15일이며, 모든 자료가 정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것임
- 아래의 그림처럼 관세청은 자료에 대하여 “통계자료는 매월 15일 전월 자료 반영”으로만 되어 있으면, 전월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3-10] 관세청 수출입 DB 제공화면

□ 관세청의 통계작성 정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관세청은 '06. 12,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입신고 불량률 Zero화를 통한 무역 통계 정확성 확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음
  - 이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종합대책」이었음
  - 종합대책 중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통한 수출입신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관세청의 종합수립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는 방안 중 하나는 “관세사 사무원 및 종업원의 자격증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관세사 사무원 및 종업원이 수출입신고서를 입력하고 있으며, 수출입신고 정정에 대하여 관세청은 별점을 부여하여 P/L제재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P/L 제재 조치를 받은 관세사에 대한 주기적인(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모든 자료는 초기 입력자료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신고서 작성 및 세관심사 프로그램에서 「자동 오류경고 시스템」 설치를 통해 수출입신고서와 적하목록 및 식약청 등 요건확인기관 검사검역증의 공통항목들을 상호 비교하여 오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미시행하고 있음
- 관세청은 '06년 발표한 수출입신고 불량률 Zero화를 통한 무역통계 정확성 확보와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을 조속히 실천함으로써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임

[표 3-41] 관세청의 수출입신고 불량률 Zero화 방안 이행내역

분류	대책	현재 반영여부
신고인의 전문성 향상	· 관세사 사무원 및 종업원의 자격증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일부반영(수출신고 신고내역 오류방지 특별 협조요청 등)
	· 전자인보이스(송품장) 표준모델 구축	· 일부반영
	· 수출입신고서 작성 경진대회 개최	· 일부반영(현재는 안함)
제제 조치 및 인센티브 강화	· 관세사 오류실적 공개	· 미반영 ※ 개별정보이어서 공개 불가능
	· 세관직원의 직권정정시 오류점수 부과 확대	· 반영(고시에 반영)
	· 무역통계 기본항목의 오류점수를 2~3배로 확대(세번, 중량, 수량, 신고금액, 원산지 등)	· 반영(고시에 반영)
	· 오류실적이 높은 경우, 물품 검사비율 확대 등 관세사와 화주에 대한 동시 제재	· 반영(고시에 반영)
	· 표본추출을 통한 신고인별 오류수준 정기적 조사	· 일부반영(1회실시, 2007년 연구용역 실시, 한국관세 무역개발원)
· 오류실적이 낮은 경우, 최고의 수출입신고인으로 선정 화물 검사비율 축소, 모범관세사 현판 수여, 무역업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혜택 제공	· 일부반영(일회성 실시)	
사전 오류방지 시스템 구축	· 신고서 작성 및 세관심사 프로그램에서 「자동 오류 경고 시스템」을 설치 - 수출입신고서와 적하목록 및 식약청 등 요건 확인기관 검사검역증의 공통 항목들을 상호 비교하여 오류 점검	· 반영(신고인 프로그램 경고 팝업, 수출입 C/S시스템 등 활용중)
	· 수출입제한 품목, 국가 DB를 신고서 작성 및 세관심사 프로그램에 탑재	· 반영
	· 오류사례집 발간 및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시스템화	· 일부반영(수출입 품목분류 사례집 및 수출입통관 매뉴얼 작성·배포)
	· 업체별 수출입단가 추세분석 실시	·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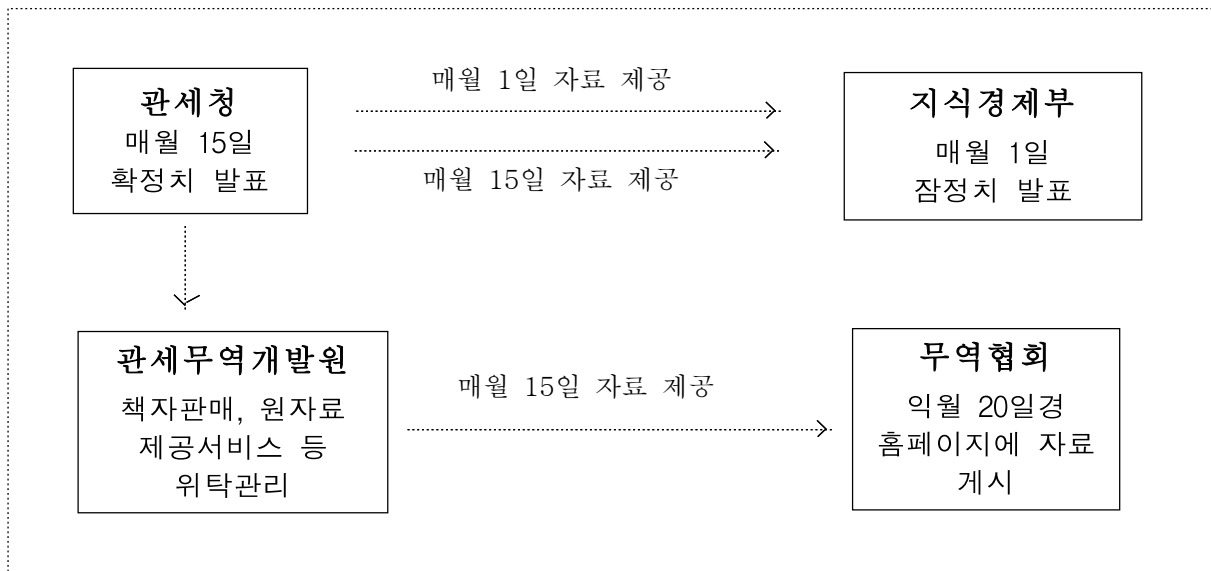
□ 무역통계자료 제공 현황

- 관세청은 익월 15일, 무역협회는 익월 20일경에 해당월 발표한 자료와 연간자료 확정 전까지 정정신고 된 수출입금액을 반영하여 무역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 연간자료는 관세청은 익년 1월 15일, 무역협회는 익년 2월 20일경에 12월 발표한 자료와 1~11월 수정된 무역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게시하고 있음

[표 3-42] 무역통계자료 제공 현황

구분	관세청	지식경제부	무역협회
자료제공일	· 익월15일	· 익월1일	· 익월20일경 · 12월 통계는 2.20일경
보도자료	· 확정치 발표	· 잠정치 발표	· 관세청, 지식경제부 보도 자료를 게시
통계 DB	· 해당월과 지난월* 무역 데이터를 업데이트		· 해당월과 지난월* 무역 데이터를 업데이트

\* 연간자료가 확정되기 전까지 수정된 자료를 업데이트 함



[그림 3-11] 무역통계자료 제공 현황

## 제6절 관세사 및 세관, 전문이용자 FGI 결과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초의 신고를 담당하는 관세사와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세관, 그리고 통계를 활용하는 전문이용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 <관세사 방문결과>

1차 - 일시 및 장소 : 2012. 4. 12, ○○관세사무소

2차 - 일시 및 장소 : 2012. 4. 26, ○○합동관세사무소

- 관세사에서는 수출입업자에서 제출받은 자료(수출 : 전자 Invoice, Packing List, 수입 : 선화증권Bill of Loading)를 기반으로 수출입신고를 대행하는 곳으로 자료의 입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입력오류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전 검토를 하고 신고수리 후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사유를 기록하고 정정
  - 수출취소 또는 수출신고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 1년까지 정정 가능
- 주기적인 수출업체에 대하여서는 기본정보를 불러와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 단, 일반적으로 기본정보에는 통화단위가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하지 않음
- 수출의 경우, 수입과 달리 관세 등의 문제 수입절차 등이 간소화되어 있으며, 수입 신고가 수출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함
  - 관세청의 선별검사(C/S 시스템, Cargo Selectivity System)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 검사 실시
-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오류점수에 따른 P/L 제재 등에 관한 사항도 알고 있음
- 각 관세사별로 사용하는 EDI 프로그램이 다름(두 곳을 방문한 결과)
- 관세사는 선적작업 전에 수출신고를 하고 있어, 실제 수출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신고내용의 정정이 많이 발생
- 수입물품의 관세납부의 경우 즉시납부업체와 성실납부업체(물품인도 후 15일 이내 관세 납부가능)로 차별화하여 성실 신고 유도

- <세관방문결과>

일시 및 장소 : 2012. 4. 26, ○○세관

- 세관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C/S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대상에 대하여 서류검사를 시행함
  - C/S 검사대상 선별기준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등록하는 전국공통선별기준(Central C/S)과 지역세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 세관별로 적용하는 세관자체선별기준(Local C/S)이 있으며, 최근 강화되는 추세
- 관세청은 연간 수출신고수리 600만건에 대하여 총 90여명(세관 및 관세청 팀장, 과장 포함)으로, 1인당 연간 약 7만건 내외를 처리
  - ※ 수입은 연간 1,000만건에 해당됨
- 세관에서는 수출입신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함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임

- <전문이용자 FGI 실시결과>

일시 : 2012. 6. 21

참석자 : 국무총리실 ○○○, 한국은행 ○○○, 무역협회 ○○○, 고려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구진, 통계청

- 전문이용자에게 지식경제부의 잠정치 자료의 활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10일경에 열림으로 이때 수출입동향을 파악하고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국무총리실 및 무역협회는 지식경제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동향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관세청의 확정치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용이하다고 함
  - 수치의 정확성 보다는 속보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함
  - 현재처럼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속보치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통계를 활용하는 연구원, 학계에서는 확정된 관세청의 자료를 활용하며, 또한 월별 자료보다는 연간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정책수립시 지식경제부의 자료가 정확성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활용하고 있음

· **신고수리일기준과 출항일 기준의 통계작성에 대한 의견**

· 수리일기준이나 출항일기준 모두 연간으로 보면 결과에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사의 입력오류를 줄이는 방안이 최선이며, 출항일로 작성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음

· 단, 출항일로 작성시 과거년도의 자료에 대한 시계열적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장기적으로는 출항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오류의 개선방안**

· 관세사의 입력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방안이 최선

· 전자적인 방식(바코드) 등을 활용하여 입력된 자료와 바코드의 일치성 검증 등  
⇒ 전반적으로 (i)기업에게 새로운 비용이 될 수 있고 (ii)바코드 전환도 역시 오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이 피력됨

· 통화단위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연구진의 의견에는 실효성에 의문을 피력함

## 제4장 무역통계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 정확한 교역데이터 확보를 위해 수출입데이터에 대한 정정은 필수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수출입신고 정정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그러나 이러한 초기 신고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정정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수출의 경우 2007~11년 기간에 신고 된 전체 신고건수 중 정정이 이루어진 건수가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입도 2007년 9.0%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1년에도 여전히 4.7%의 정정 비율을 기록함
  - 수출입신고 정정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낭비와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 실제로 이를 관리하는 세관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정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많은 경우가 세관에서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승인하고 있음

[표 4-1] 수출입 신고건수 및 정정건수

(단위: 건)

수출			
연도	신고건수	정정건수	비중(%)
2007	5,030,768	523,637	10.4
2008	5,234,178	554,159	10.6
2009	5,399,939	526,573	9.8
2010	6,237,860	569,389	9.1
2011	6,305,365	668,910	10.6
수입			
2007	5,667,966	508,396	9.0
2008	5,850,875	495,782	8.5
2009	6,699,545	504,197	7.5
2010	9,143,039	522,173	5.7
2011	10,611,272	499,239	4.7

자료: 관세청 제공자료 인용

□ 관세청이 제공한 수출 및 수입신고 정정의 귀책사유를 보면, 신고의뢰인의 오류로 인한 정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수출의 경우 신고의뢰인의 오류에 따른 정정은 2009~2012년 1월 기간 70~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신고인(관세사)의 오류가 14~19% 내외, 신고의뢰인(제조자)의 오류로 인한 정정이 5~13%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에 수입의 경우 신고의뢰인(화주 등)의 오류로 인한 오류가 동 기간 약 65% 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신고인(관세사) 오류가 34~39%를 차지해 수출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4-2] 수출신고 귀책사유별 오류순위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1
신고의뢰인(수출자/위탁자)	70.4	75.4	76.5	75.2
신고인(관세사 등)	16.6	14.5	16.7	18.9
신고의뢰인(제조자)	12.9	10	6.5	5.9
외국인 구매자	0	0.1	0.1	0
기타 사유	0.1	0	0.1	0

자료: 관세청 제공자료 인용

[표 4-3] 수입신고 귀책사유별 오류순위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1
신고의뢰인(화주 등)	65.5	64.1	65.3	59.9
신고인(관세사 등)	33.7	33.9	34	39.9
기타 사유	0.7	1.9	0.6	0.1
외국인 판매자	0	0.1	0	0

자료: 관세청 제공자료 인용

□ 수출입신고 정정이 결국 신고인 혹은 의뢰인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발표시기의 문제는 우리나라 무역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수출입통계는 지식경제부가 익월 1일에 전날까지 집계된 이전 달의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매달 15일에 그리고 1달 이내에 무역 협회 및 관련 포털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게시함
- 이는 짧게는 1달에서 길게는 2달 이상의 시차를 두고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며, 집계와 발표간의 간격이 짧다는 점은 결국 정정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됨

[표 4-4] 국가별 무역통계 발표시기

국가	홈페이지 발표시기	예)2012년 1월 데이터 발표시기	
미국	2달 후 2째주 금요일	2012년 3월 9일	
캐나다	42일 후 (평균)	2012년 3월 2째주	
유럽(eurostat)	2달 후 중순경	2012년 3월 16일	
홍콩	2달 후 중순경	2012년 3월 15일	
일본	확정치	1달 후 영업일 하루 전	2012년 2월 27일
	잠정치	1달 후 3째주경	2012년 2월 20일
싱가포르	1달 후 중순경	2012년 2월 17일	
대만	1달 후 초	2012년 2월 7일	

자료: 관세청 제공자료 인용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은 '12년 3월부터 무역통계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관세청은 언론의 무역통계 오류에 대한 대비책으로 오류검증체계를 강화하여 시행('12. 3~)
  - 수출신고단계에서 신고인에게 안내팝업창 신설
    - \* 최근 품목별(규격별) 신고금액에 대한 검사기준을 1,000만불 ⇒ 500만불(약50억원)로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단위착오에 의한 오류 최소화를 위해 선별조건을 강화함

UNI-PASS 관세청 홈페이지 | 업무처리 | 정보제공 | 고객지원 | 통관단일창구

Home > 업무처리 > 전자문서함 > 임시문서함

수출신고서

수출제출번호: 87693 - 12 - 000033X | 전송구분: 9 | 주식회사 삼화택

적용환율: 1,126.74 USD | 남북교역여부: [ ]

총중량: 10,583.6 KG | 총포장갯수: GT [ ] 17

결제환율: USD [ ] 1,126.74 | **총신고가격: 5,000,000 USD**

결제금액: 131,263 | 총신고금액: 5,558,450,000 KRW [계산]

운임: 0 / 4,000,000 KRW | 보험료: 0 / 68,880 KRW

컨테이너적입여부: [ ] 미적입

컨테이너번호: [ ] | 총컨테이너수: [ ]

차대관리번호: [ ] | 총차대번호수: [ ]

보세운송신고인: [ ]

보세운송신고기간: [ ]

선박회사(항공사): [ ]

출항예정일자: 2012년 02월 29일 | 적재예정보세구역: 111111111

신고인 기재란

FTA원산지발급신청 | 미리보기 | 인쇄 | 로컬임시저장 | 전송 | 취소

웹 페이지의 메시지

⚠ 신고가격 및 결제단위가 적정하지 확인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 수출통관 심사단계에서의 선별 강화

수출신고내역 조회

나동급

신고번호	110 - 10 - 12 - 00393241	제출번호	80033 - 12 - 500602U
------	--------------------------	------	----------------------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조회 | 화면지움

수출신고서출력

신고일	2012/03/13	검사일		신고수리일	2012/03/13
접수자	111111 자동처리	검사자		심사자	
신고자		간이환급	NO		
수출대행자		검사방법선택	A: 수출신고서 검사		
제조사		검사희망일	2012/03/13		
수출화주 상호		물품소재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출화주		물품상태	N		
통관고유번호					
지정사유	수출 C/S (신고금액 과다 우려가 있으니 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국	EG 이집트	구매자			
적재항	KRPUS 부산항	검사구분	S 서류제출 선별대상		
신고구분	H Paperless 수출신고	신고정정		조사의뢰	
거래구분	11 일반형태 수출	신고취하		신고각하	
수출종류	A 일반수출	보완통보		신고수리정정	12/03/23

· 신고수리 후 오류 예상건\*에 대한 선별 강화

\* 지난 1년간 품목별 평균 단가보다 5배 이상인 값이 신고 된 수출입건에 대해 오류 점검 실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1	세관	과	일련번호	련번호	수출회사업자번호	수출화주상호	수리일자	세번부호	품명	중량	란신고금액	평균단가	최소금액	최대금액	배율
2	130	10	1200602905	1	1138519030	(주)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	20120517	5208390000	기타 직물	223.8	3428234	15318.29	3.533057851	171.5208333	17.9
3	120	10	1200793295	1	5058502422	(주)화신	20120517	8479899099	기타	34660	2108624	60.84	6.672989615	6.672989615	1.8
4	030	15	1201755808	1	1048158502	(주)아이마켓코리아	20120517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31750	1469550	46.29	425.241573	425.241573	0
5	040	15	1204243613	1	5148133009	(주)태양기전	20120517	3920620000	플리(에틸렌테레프스)	434	424793	978.79	20.4	53.91304348	3.6
6	050	10	1200110395	1	6098104684	두산중공업(주)	20120517	2710197520	전기전열유	7600	408040	53.69	1.325854701	1.325854701	8.1
7	010	15	1203072808	1	1348149358	(주)태성산전	20120517	7419999000	기타	117	371539	3175.55	10.03084961	139.3043478	4.6
8	030	09	1200604457	1	6028133247	(주)두익이앤지	20120517	8503002090	기타	35000	349066	9.97	967.1428571	967.1428571	0
9	102	10	1200040038	1	1268163382	(주)누가의요기	20120517	3305909000	기타	18887	281211	14.89	0.625	0.625	4.8
10	030	15	1201741348	1	6028144569	(주)라베타	20120517	7326909000	기타	185854	271253	1.46	101.2359551	101.2359551	0
11	020	15	1201714756	1	1308622008	브리드 주식회사	20120517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단자(	54	246392	4562.81	95.425	233.3	3.9
12	021	10	1200875614	1	1248100998	삼성전자(주)	20120517	9405409000	기타	3080	176931	57.45	362.9444444	362.9444444	0
13	030	09	1200597055	56	1068197118	현대글로벌비스(주)	20120517	9401909000	기타	849.1	169553	199.69	0.3	0.3	133.1
14	020	15	1201712325	1	1298637137	비에프케미칼(주)	20120517	7410110000	정제한 동의 것	7391	113156	15.31	0.1	0.1	30.6
15	010	15	1203092479	1	1208179848	(주)피앤에이	20120517	3917329000	기타	2204.5	81469	36.95	1214.94382	1214.94382	0
16	030	09	1200604230	1	1088123271	(주)오리엔트테크니카	20120517	8426910000	도로주행차량배 장	3130	61000	19.49	3.542168675	3.542168675	1.1
17	062	10	1200213170	1	3058108153	(주)EG	20120517	2821101000	산화철	10800	60223	5.58	0.219479167	0.6	1.9

□ 이러한 우리나라 무역통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향의 시급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 및 장기 과제로 구별하여 제안함

제1절 단기 개선과제

1) 관세사 교육강화

□ 초기 자료를 입력하는 곳이 관세사이고 매년 관세사의 오류에 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관세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또한 교육 미수료시 그에 대한 조치 방안을 관세청 내부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 관세청은 부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P/L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관세사에 대하여서는 분기별, 반기별 교육과정을 철저히 하여 관세사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2) 관리시스템 개선

□ 한·EU FTA 수출입데이터 오류가 언론에 언급된 이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몇 가지 부분에서 이미 개선방안을 시행 하고 있음

- 먼저 관세청이 매월 1일 지식경제부에 제공되는 자료가 기존에는 전월 1~30(31)일까지의 정정이 반영되지 않은 수출입신고 누적데이터만을 제공하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신고 후 정정이 된 수치를 최대한 반영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관세청 해당 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
  - 또한 수출신고단계에서 '신고인 안내 팝업', 신고금액 과다 품목에 대한 경고 단계 추가 등 신고단계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도입됨
  - 신고인에게 일정금액 이상(1,000만불→500만불) 신고시 팝업창이 뜨도록 정비하였고 신고수리 후 1년간 품목별 단가를 활용하여 5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자료 추가검토를 요청하는 경고문구가 작동됨
- 특히, 품목별 단가와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이 아닌 관세사가 신고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이와 더불어 품목별, 국가별 수출/수입정정 현황을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살펴본 최초신고액과 최종수정액 차이에서 나온 결과를 보다 세밀한 단위에서 정리하여 위험품목군, 위험품목 국가를 선정하여 관세청이나 세관 차원에서의 '수출입신고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함

### 3)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확성 확보

- 관련기관(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관련 협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금년 이란제제 조치에서 발견된 오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 마련

### 4) 관련 용어의 정리 필요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통계청 내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식경제부의 자료는 통계이기 보다는 집계치(속보치)의 의미를 가진 자료라는 의견이 다수였음
  - 관세청 자료는 정정이 가능함으로 잠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지식경제부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통관실적(잠정치)”라는 용어 대신 “신고수리일기준 집계치(속보치)”로 활용하는 것이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하나,
  - 40년 동안 잠정치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인식되어 있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수리일기준 잠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함
- 관세청은 익월 15일자료를 “신고수리일기준(잠정치)”의 용어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혼란 방지 및 수출입 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나,
  - 무역통계는 월간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월간자료를 공표함에 있어 지식경제부가 신고수리일기준 잠정치라는 용어를 활용함에 따라 신고수리일기준(월간)확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에게 무역통계작성절차에 의해 연간자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정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지시켜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주석을 통해 설명



## 제2절 중장기 개선과제

### 1) 수출통계의 출항일 기준 도입

□ 우리나라 무역통계는 수출 및 수입은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됨

- 그러나 관세청은 수출에서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된 무역통계 외에도 출항일을 기준으로 한 수출입물류통계도 작성됨
- 수출입물류통계의 경우, 수출액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관세청 자체적으로는 출항일 기준 수출액 산정이 가능하며 제2장에서 신고수리일과 출항일을 기준으로 한 수출데이터 차이를 살펴봄

□ UN 국제상품 무역통계에 따르면 무역통계 기록시점은 '상품이 일국의 경제영역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통계에 계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국가마다 통계작성 기준시점이 상이하나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출항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네델란드 등은 신고일 기준으로 수출 신고가 산정됨

- 2002년 감사원도 관세청 감사에서 '출항일 기준'으로 무역통계를 작성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무역통계가 집계되고 있음

□ 동일한 수출행위에 대해서 신고수리일과 출항일로 이원화된 통계가 작성된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한 무역통계 작성은 많은 정정이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정확히 선적되어 출항되는 시점에서 작성되는 신고의 경우, 확실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출항시기 변경이나 선적물량 변경, 수출목적국 및 기타 정보 변경의 소지가 적어 정정해야할 사항이 많지 않음

- 출항일 기준으로 작성된다고 하여 정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정정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얻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임  
하지만, 출항일 기준으로 통계계상시점을 변경할 경우 이러한 신고정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계 공표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따라서 출항일 기준으로 무역통계 작성시점을 변경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1957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던 무역통계를  
'출항일'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무역데이터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 최근 데이터의 경우 관세청의 협조로 무역데이터를 '출항일'을 기준으로 한 무역  
데이터로 변경이 가능하나 이러한 전환이 최초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1957년도  
까지 가능한지는 문제로 제기됨
  - ※ 관세청 확인 결과 이전자료에 대한 출항일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동시에 무역통계가 일시에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 무역통계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음
- 무역데이터가 우리나라 관세청이나 무역협회에서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UN,  
WTO 등 국제기구에 보고되어 왔고, 각 기관은 국가 간 무역데이터의 오차를 줄  
이는 작업을 통해 현재 데이터를 구축함
- 우리나라 데이터를 '출항일'기준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모든 무역통계를 새롭게  
작성할 경우, 국제기구에 보고된 자료에 대한 변경이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해야함
- 무역통계의 질적인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기준시점을 변경한 경우라도 외국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무역통계를 전면 수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무역통계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무역통계 기준시점(신고수리일기준→출항일)에 대한 변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2) 관세청의 수출입신고 불량률 Zero화를 통한 무역통계 정확성 확보와 관련한  
보도자료 조속한 실천

- “관세사 사무원 및 종업원의 자격증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관세사 사무원 및 종업원이 수출입신고서를 입력하고 있으며, 수출입신고 정정에 대하여 관세청은 벌점을 부여하여 P/L 제재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P/L 제재 조치를 받은 관세사에 대한 주기적인(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모든 자료는 초기 입력자료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됨
- 또한 신고서 작성 및 세관심사 프로그램에서 「자동 오류경고 시스템」 설치를 통해 수출입신고서와 적하목록 및 식약청 등 요건확인기관 검사검역증의 공통 항목들을 상호 비교하여 오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미시행하고 있음
- 관세청은 '06년 발표한 수출입신고 불량률 Zero화를 통한 무역통계 정확성 확보와 관련한 보도자료 내용을 조속히 실천함으로써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임

### 3) 관세청 전담 인력 보강

- 현재 관세청 본청에서 수출입자료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인력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 정도로 파악됨
  - 관리를 담당하는 나머지 인력은 전담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출입자료 관리를 보조하거나 파견 인력 등으로 구성됨
  - 1년에 신고건수 기준으로 1,400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이들 인력만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우며, 말일까지 작성된 데이터를 1일에 지식경제부, 15일에 관세청에서 발표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큼
- 따라서 무역자료에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동 자료를 관리하는 관세청 인력 보강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
  - 특히 우리나라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출입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

에서 무역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뒤따라야 함

- 대규모 인원 충원이 아니라 현재 수출입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 부서에 2~3인의 전담인력 충원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성된 자료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부과하는 작업은 무역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짐

□ 또한 세관 차원에서도 1년에 1,400만 건이 넘는 수출입 데이터를 수리하고 각각 100만 건 내외의 정정을 정확히 관리하는 높은 업무 부담을 가짐

- 대부분 전산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세관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며 실제 각 세관에서는 수입에 비해 수출은 상대적으로 심사를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음
- 수출입데이터를 최초로 접수하고 관리하는 세관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과하면서 책임감 있게 수출입데이터를 관리하도록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무역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됨
- 그러나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단기적으로 수출입정정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인력충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표 4-5]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요약)

통계작성 절차별	과제 유형	개선 과제	추진 내용
통계작성 기획	조사방법 개선	○ 수출통계의 출항일 기준 작성	○ UN 등 국제기준에 따라 통계 계상시점을 출항일 기준으로 작성
자료수집	지침서 작성·보완 및 교육	○ 관세사 교육강화	○ P/L 제재 조치 등 오류점수가 높은 관세사를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 실시
자료입력 및 처리	조사(보고)현장 관리	○ 관세청의 수출입신고 불량률 Zero화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	○ '06년 12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조속한 실천
	전산(보고)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관리시스템 개선	○ '12년 3월부터 적용한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며, 또한 품목별 단가와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이 아닌 관세사가 신고시 검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문서화 및 자료제공	업무매뉴얼 작성	○ 정정현황 반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품목별, 국가별 수출/수입	○ 정정과 관련한 위험품목군과 위험품목 국가 등에 대한 관리 매뉴얼 마련
	통계공표 자료 개선	○ 통계관련 용어 및 자료제공 개선	○ 통계 발표용어를 신고수리 일기준 확정치로 변경 * 주석을 통해 연간자료 확정 이전에는 확정치의 정정이 가능함을 설명
		○ 수출입물류통계 간행물 보완	○ 수출입신고 수리 기준으로 작성 한 PART B부분에 총괄표 작성 ○ 보고서 일러두기에 무역통계와의 차이점 및 어떤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된 통계인지 설명
사후관리	인력·예산 통계 인프라 확보 등	○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 력체계 구축	○ 특이한 사항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타	인력·예산 통계 인프라 확보	○ 관세청 통계작성 전담인력 확보	○ 신고건수 대비 통계작성을 위한 인력 부족

## 제5장 결론 및 추가 제언

-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무역 통계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정확한 무역통계데이터는 우리나라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향후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됨
  
- 우리나라 무역통계는 속보성에서는 외국에 비해 높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
  - 1일에 지경부에서 발표되는 전달 수출입동향은 우리나라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를 국제교역의 '선행자료'로 여길 정도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지님
  - 그러나 최근 일어난 몇 차례의 오류에 대한 논쟁은 정보의 생명인 '신뢰성'에 손상을 입힘
  
- 무역통계의 품질향상은 결국 수출자(수입자), 관세사 및 관세청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함
  - 무역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무역통계 작성 및 관리의 주체인 이들 수출자(수입자), 관세사, 관세청이 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누군가가 품질향상을 위한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함
  - 관세청에 대한 적절한 인력보강이나 무역데이터 작성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등은 관세청이 무역통계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정정에 대한 비용 부과는 관세사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동기제공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발전로드맵으로는 현재 송품장이 표준화는 되어 있으나, 수출입업체별로 공통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사항임
  
- 전문이용자 FGI에서도 무역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초입력을 담당하는 관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국제적으로 국가 간의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입업체의 표준양식이 도입될 것을 대비하여 관세사의 입력에 대한 오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자적인 입력 방식(ICR, 처방전 스캐너 등)의 도입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위와 같은 전자적인 방식의 도입은 도입가능성 검토, 도입시 문제점, 효과 등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검토 후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자료>

웹사이트

관세청,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미국통계청, <http://www.usa.gov/Topics/Reference-Shelf/Data.shtml>

JETRO, [www.jetro.org](http://www.jetro.org)

EU통계청, [www.eurostat.org](http://www.eurostat.org)

<http://www.oanda.com/currency/average>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수출입물류통계연보



【별첨 1】 연도별 · 정정항목별 수출정정

(단위: 건)

항목	내용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11	거래구분	5,743	7,752	8,587	8,661	8,743	39,486
12	수출종류	192	375	231	189	268	1,255
13	결제방법	10,108	12,400	11,922	12,804	12,191	59,425
14	목적국	10,002	11,484	11,377	12,761	13,832	59,456
15	적재항	3,867	4,745	5,433	6,713	11,427	32,185
16	운송형태	2,368	2,934	3,224	3,895	5,796	18,217
16a	운송용기	1,036	1,358	1,469	1,670	2,355	7,888
16b	컨테이너적입여부	180	177	209	222	158	946
16c	컨테이너번호	658	617	718	846	694	3,533
17	제조원료일	29	43	42	91	94	299
18	물품소재지 우편번호	146	180	246	233	312	1,117
18a	물품소재지	1,665	847	822	809	1,255	5,398
19	l/c번호	9,714	10,284	9,036	10,063	9,377	48,534
2	수출지상호	4,297	5,601	5,267	5,958	6,027	27,150
20	중고여부	353	446	433	406	319	1,957
20a	포괄소액구분	5	4	3	3		15
21	사전통보여부	3	8	21	8	1	41
22	반송사유	181	120	72	186	175	734
23	품명및규격	7,063	9,764	11,816	11,850	16,242	56,735
23a	차대번호	4,144	4,968	4,905	3,874	3,960	21,851
23b	거래품명	6,313	9,113	11,333	10,202	14,768	51,729
23c	상표명	14,021	1,529	1,839	1,056	941	19,386
23d	원산지국가부호	2,431	3,625	3,461	3,228	3,548	16,293
23e	원산지결정기준	237	428	725	1,022	277	2,689
23f	원산지표시여부	252	415	899	941	290	2,797
23g	서류첨부여부	405	537	287	330	320	1,879
23j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여부					1,756	1,756
24	세번부호	11,294	20,383	26,972	27,087	35,058	120,794
25	송품징부호	7,576	9,757	12,091	14,905	21,050	65,379
26	신고가격	150,853	183,858	193,068	214,468	247,558	989,805
27	순중량	100,041	106,469	115,154	127,809	153,199	602,672
27a	순중량단위			1			1
28	수량	30,842	35,262	37,193	41,167	45,278	189,742
28a	수량단위	1,861	4,694	4,590	5,030	6,059	22,234
29	포장갯수	108,204	114,809	120,459	135,574	148,931	627,977
29a	포장종류	11,774	12,538	14,403	15,523	17,866	72,104
2a	수출지부호	15,058	18,322	856	98	9	34,343
2b	수출지구분	5,491	9,603	8,207	8,093	9,528	40,922
2c	수출회주 주소	6,007	9,219	7,368	7,645	8,121	38,360
2d	수출회주 상호	682	5,090	5,647	6,385	6,284	24,088
2e	수출회주 대표자명	4,320	6,091	5,762	5,762	5,824	27,759
2f	수출회주 통관고유부호	5,253	8,042	6,407	7,173	7,112	33,987

항목	내용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2g	수출회주 사업자등록번호	5,214	8,194	6,121	6,884	6,860	33,273
31	총종량	119,289	125,080	131,569	146,271	162,926	685,135
31a	총종량단위			1		1	2
32	총포장갯수	102,421	106,907	110,822	124,649	134,863	579,662
32a	총포장종류부호	9,397	9,984	11,254	12,101	13,533	56,269
34	인도조건	10,420	8,930	7,618	8,267	10,274	45,509
34a	결제통화	7,243	6,226	4,588	5,242	5,656	28,955
34b	결제금액	121,072	137,026	145,712	160,588	179,167	743,565
35	운임	71,146	30,966	19,496	19,957	24,062	165,627
36	보험료	49,648	20,682	12,377	13,048	15,281	111,036
3a	제조지상호	6,721	10,417	9,920	10,189	11,570	48,817
3c	통관고유부호	7,360	11,000	10,633	10,971	12,410	52,374
4	구매지상호	15,999	20,056	20,912	20,929	22,849	100,745
42	화물관리번호	881	952	764	771	690	4,058
42a	전송구분	147	165	133	112	111	668
43	보세운송신고인	98	189	109	82	79	557
44	보세운송기간씨작일	73	162	111	87	256	689
44a	보세운송기간종료일	73	167	112	88	254	694
47	적재의무기한	85,180	118,396	100,638	112,552	125,804	542,570
48	요건확인구분	580	478	639	930	164	2,791
48a	요건승인번호	690	648	833	1,271	210	3,652
48b	발급서류명	579	476	680	1,065	170	2,970
48c	발급일자	569	561	706	1,108	210	3,154
48d	법령부호	574	470	636	996	164	2,840
4a	구매지부호	3,620	14,784	20,903	19,529	21,165	80,001
5	환급신청인	4,296	5,117	6,023	7,097	6,771	29,304
50	모델규격	137,943	160,315	156,492	171,511	196,368	822,629
51	규격성분	4,499	5,329	6,900	9,569	9,561	35,858
52	규격수량	177,569	199,244	216,389	247,260	280,956	1,121,418
53	규격수량단위	51,182	68,551	76,729	83,366	96,319	376,147
54	규격단가	161,344	214,339	230,235	248,185	283,088	1,137,191
55	규격금액	257,229	316,821	345,153	383,797	436,619	1,739,619
56	남북교역여부	28	41	25	27	5	126
57	수출대행자 통관고유부호		3,192	5,713	6,592	6,836	22,333
58	수출회주 소재지		3,034	4,090	4,660	4,987	16,771
59	선박회사(항공사) 이름					114	114
5a	간이환급	81	150	155	131	89	606
6	환급기관	3,957	2,219	188	22	3	6,389
60	선박회사(항공사) 부호					113	113
61	선박명(편명)					307	307
62	출항예정일자					271	271
63	적재예정보세구역					162	162
64	수출요건확인서류 구분코드					809	809
64a	수출요건승인번호					1,150	1,150

항목	내용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64b	발급서류명					837	837
64c	수출요건확인서 발급일자					1,020	1,020
64d	법령부호					815	815
64e	법령적용여부					868	868
64f	요건승인번호 미기재 사유					530	530
6a	제조사 우편번호	4,793	6,918	7,919	8,047	30,189	57,866
9	신고구분	180	227	418	400	382	1,607
999	(비어 있음)	4,367	7,204	9,572	9,804	12,814	43,761
합계		1,971,131	2,259,508	2,335,903	2,572,895	2,947,715	12,087,152

【별첨 2】품목별 수출액 정정건수 및 정정금액 : HS 2단위

(단위: 백만 달러, 건)

HS2	총수출건수	총수출액	정정횟수	정정금액	수출건수 대비 비중	총정정건수 대비 비중	정정금액 대비 비중
01	4,228	9.8	26	0.4	0.6%	0.0%	3.8%
02	5,372	155.0	179	-2.3	3.3%	0.0%	-1.5%
03	199,303	6,410.1	9,583	-550.7	4.8%	1.0%	-8.6%
04	4,687	91.0	136	-0.8	2.9%	0.0%	-0.8%
05	6,877	274.9	140	-5.5	2.0%	0.0%	-2.0%
06	19,661	414.0	2,312	-4.8	11.8%	0.2%	-1.2%
07	57,012	588.6	2,891	-25.5	5.1%	0.3%	-4.3%
08	32,775	620.4	4,892	-88.3	14.9%	0.5%	-14.2%
09	7,605	122.8	184	-7.8	2.4%	0.0%	-6.3%
10	1,862	24.7	161	-0.1	8.6%	0.0%	-0.3%
11	13,250	235.3	641	-36.6	4.8%	0.1%	-15.6%
12	31,095	1,013.7	1,091	-34.8	3.5%	0.1%	-3.4%
13	10,415	295.1	283	-1.7	2.7%	0.0%	-0.6%
14	120	0.8	3	.	2.5%	0.0%	0.0%
15	10,495	282.7	538	-4.4	5.1%	0.1%	-1.5%
16	33,075	848.0	1,045	-73.4	3.2%	0.1%	-8.7%
17	41,731	1,611.2	1,601	-64.4	3.8%	0.2%	-4.0%
18	8,208	180.5	367	-5.0	4.5%	0.0%	-2.8%
19	144,833	2,429.2	6,653	-824.5	4.6%	0.7%	-33.9%
20	53,893	856.8	2,025	-101.1	3.8%	0.2%	-11.8%
21	151,629	3,094.8	6,072	-572.0	4.0%	0.6%	-18.5%
22	87,029	2,087.1	3,451	-365.4	4.0%	0.4%	-17.5%
23	10,809	513.4	285	0.4	2.6%	0.0%	0.1%
24	121,730	2,738.4	362	-78.3	0.3%	0.0%	-2.9%
25	28,601	1,780.8	1,698	-43.6	5.9%	0.2%	-2.4%
26	3,840	920.1	891	-15.0	23.2%	0.1%	-1.6%
27	130,997	172,539.7	27,761	-20.1	21.2%	2.9%	0.0%
28	164,239	12,638.6	4,752	-278.7	2.9%	0.5%	-2.2%
29	304,619	83,344.5	20,352	-757.0	6.7%	2.1%	-0.9%
30	85,848	4,203.6	2,030	3.6	2.4%	0.2%	0.1%
31	8,646	2,506.6	364	-17.4	4.2%	0.0%	-0.7%
32	358,745	6,885.9	8,203	-191.9	2.3%	0.8%	-2.8%
33	185,142	2,903.1	5,525	-1,319.5	3.0%	0.6%	-45.5%
34	132,324	2,461.5	3,317	-61.8	2.5%	0.3%	-2.5%
35	109,612	1,338.2	2,634	-31.9	2.4%	0.3%	-2.4%
36	1,170	54.8	36	.	3.1%	0.0%	0.0%
37	61,191	1,493.4	928	-274.9	1.5%	0.1%	-18.4%
38	333,652	12,354.5	7,766	-296.9	2.3%	0.8%	-2.4%
39	2,911,680	107,964.7	74,090	-4,599.4	2.5%	7.7%	-4.3%
40	732,071	30,721.5	8,606	-227.1	1.2%	0.9%	-0.7%
41	183,596	4,055.4	5,198	-130.7	2.8%	0.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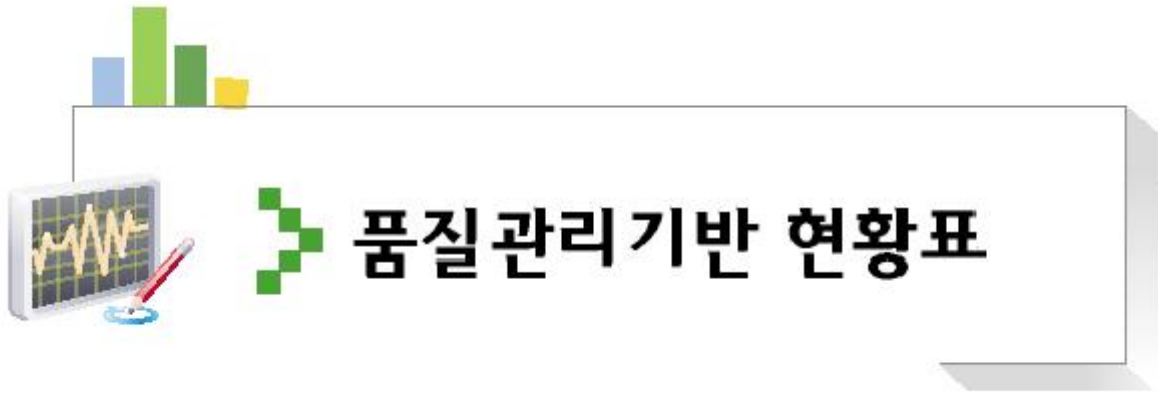
HS2	총수출건수	총수출액	정정횟수	정정금액	수출건수 대비 비중	총정정건수 대비 비중	정정금액 대비 비중
42	104,114	564.2	1,897	-41.1	1.8%	0.2%	-7.3%
43	4,162	68.5	77	1.2	1.9%	0.0%	1.7%
44	46,518	298.9	1,257	-289.7	2.7%	0.1%	-96.9%
45	359	1.2	6	.	1.7%	0.0%	0.2%
46	892	6.9	14	.	1.6%	0.0%	0.2%
47	6,679	404.2	364	-8.9	5.4%	0.0%	-2.2%
48	467,585	13,255.3	16,719	-1,208.5	3.6%	1.7%	-9.1%
49	97,283	1,363.4	2,295	-92.9	2.4%	0.2%	-6.8%
50	52,741	505.8	1,131	-2.1	2.1%	0.1%	-0.4%
51	25,133	460.5	544	-33.2	2.2%	0.1%	-7.2%
52	221,765	3,318.0	9,901	-26.5	4.5%	1.0%	-0.8%
53	5,578	79.7	353	-0.4	6.3%	0.0%	-0.5%
54	894,793	14,841.8	75,501	-414.6	8.4%	7.8%	-2.8%
55	292,420	7,535.2	11,835	-49.8	4.0%	1.2%	-0.7%
56	245,673	3,290.6	5,344	-102.7	2.2%	0.6%	-3.1%
57	6,370	171.8	233	.	3.7%	0.0%	0.0%
58	274,266	2,607.9	13,369	-39.2	4.9%	1.4%	-1.5%
59	395,605	6,172.9	11,747	-54.3	3.0%	1.2%	-0.9%
60	1,253,031	17,513.2	151,249	-708.7	12.1%	15.6%	-4.0%
61	361,193	4,263.1	14,344	-157.6	4.0%	1.5%	-3.7%
62	435,425	3,426.0	9,684	-185.3	2.2%	1.0%	-5.4%
63	185,394	3,074.2	5,348	-32.3	2.9%	0.6%	-1.1%
64	157,240	2,219.3	2,621	-189.7	1.7%	0.3%	-8.5%
65	40,307	607.0	740	-31.1	1.8%	0.1%	-5.1%
66	1,550	16.0	50	-0.1	3.2%	0.0%	-0.5%
67	28,080	216.7	347	-12.7	1.2%	0.0%	-5.8%
68	129,129	2,223.9	2,869	-66.3	2.2%	0.3%	-3.0%
69	48,478	640.9	944	-70.4	1.9%	0.1%	-11.0%
70	144,195	3,846.8	4,471	-204.3	3.1%	0.5%	-5.3%
71	310,531	19,500.2	4,598	-1,468.0	1.5%	0.5%	-7.5%
72	783,413	102,569.7	36,341	-5,296.5	4.6%	3.8%	-5.2%
73	961,441	43,471.7	29,685	-6,838.9	3.1%	3.1%	-15.7%
74	225,090	20,861.1	10,735	-926.6	4.8%	1.1%	-4.4%
75	11,449	1,374.6	282	-11.7	2.5%	0.0%	-0.9%
76	264,089	11,533.6	8,750	-263.4	3.3%	0.9%	-2.3%
78	5,523	1,184.1	389	-98.2	7.0%	0.0%	-8.3%
79	22,917	4,733.8	1,561	-7.8	6.8%	0.2%	-0.2%
80	12,528	223.1	349	-5.0	2.8%	0.0%	-2.2%
81	23,873	1,564.5	677	-1.2	2.8%	0.1%	-0.1%
82	481,175	7,011.5	9,758	-1,212.3	2.0%	1.0%	-17.3%
83	238,774	3,769.3	5,346	-133.2	2.2%	0.6%	-3.5%
84	5,009,343	238,744.1	90,120	-17,036.3	1.8%	9.3%	-7.1%
85	9,893,483	513,658.4	111,548	-12,113.6	1.1%	11.5%	-2.4%
86	30,120	2,679.1	201	-32.4	0.7%	0.0%	-1.2%

HS2	총수출건수	총수출액	정정횟수	정정금액	수출건수 대비 비중	총정정건수 대비 비중	정정금액 대비 비중
87	2,091,801	254,562.5	50,780	-6,666.1	24%	5.2%	-2.6%
88	66,470	4,307.3	481	29	0.7%	0.0%	0.1%
89	5,806	210,951.4	1,101	2,042.3	19.0%	0.1%	1.0%
90	1,718,927	156,222.9	26,610	-1,927.8	1.5%	2.7%	-1.2%
91	29,189	416.2	813	-12.3	2.8%	0.1%	-3.0%
92	42,551	802.5	1,086	-3.0	2.6%	0.1%	-0.4%
93	5,641	1,116.9	190	-7.6	3.4%	0.0%	-0.7%
94	175,251	4,797.5	5,136	-751.7	2.9%	0.5%	-15.7%
95	111,984	2,079.4	2,376	-67.8	2.1%	0.2%	-3.3%
96	291,846	2,575.0	4,731	-80.4	1.6%	0.5%	-3.1%
97	4,525	1,475.9	80	-317.2	1.8%	0.0%	-21.5%
<b>합계</b>	<b>35,537,365</b>	<b>2,178,245.6</b>	<b>968,050</b>	<b>-68,363.9</b>	<b>2.7%</b>	<b>100.0%</b>	<b>-3.1%</b>

주1: .은 단위미만의 자료임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

【별첨 3】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부	문	무역
통	계	무역통계
승	인	번호 13401
작	성	기관 관세청
진	단	일자 2012년 월 일
품질 진단 팀	연	구원 김한성
	연	구보조 유도일

응 답 자	소속부서	관세청 통관기획과
	성명	○ ○ ○
	전화번호	(042) ○○○○
	E-mail	





## 제2부 통계작성 여건

### 1. 인적자원 여건

#### ○ 통계담당 인력현황 및 전문성

직급/성명	성별	구체적인 통계업무	통계 업무 전담 정도 (본인 업무 100% 대비)	현 보직 근무연수	통계업무 경력	통계교육 이수 실적 (최근 3년간)
○○○	남	수출입통계	100%	년 11월	년 11월	0회 0일
○○○	남	수출입통계	100%	년 1월	년 1월	0회 0일
○○○	여	수출입통계	100%	년 1월	년 1월	0회 0일
○○○	남	수출입통계	100%	10년 월	15년 월	0회 0일
○○○	남	수출입통계	100%	2년 6월	3년 월	0회 0일
○○○	여	통계분석	100%	1년 10월	3년 1월	0회 0일
○○○	여	통계분석	100%	1년 월	2년 월	0회 0일
○○○	남	통계분석	100%	1년 2월	2년 월	회 일
○○○	남	통계업무총괄	100%	년 8월	년 8월	회 일
			%	년 월	년 월	회 일
평균			%	년 월	년 월	회 일

#### 기입요령

#### □ 통계담당 인력현황 및 전문성

##### ○ 직급/성명

해당 통계의 담당과(팀)장급 이하 직원의 직급과 성명을 기입함(일용직 제외)

##### ○ 구체적인 통계업무

해당 통계의 기획, 분석, 행정, 지원, 자료처리, 현장조사 등 업무내용을 기재

##### ○ 통계업무 전담정도

담당업무 중 해당 통계업무 비중을 기입

예) 해당 통계업무만 전담하는 경우 100%, 겸임자인 경우 30% 등으로 기재

##### ○ 현 보직근무연수

현재의 직책 또는 직무를 담당한 기간 기재

##### ○ 통계업무 경력

현 보직기간과 과거 경력 중 통계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 ○ 통계관련 교육훈련 이수 실적(최근 3년간)

최근 3년간의 통계관련 교육회수 및 교육일수를 각각 합산하여 기재

##### ○ 평균

통계담당 인력현황에 기재된 담당자들의 통계업무 전담정도, 현 보직 근무연수, 통계업무 경력, 통계교육 이수 실적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여 각각 기입

## II. 물적자원 여건

### 1. 통계작성관련 예산규모

(단위: 천원)

	년	년	년
자체실시			
인건비			
외부기관 위탁			
인건비			
합 계			

### 2.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현황

통계업무단계	통계생산	통계관리	통계서비스
시스템 명칭			
운영장비			
통계분석패키지			

## 기입요령

### 1. 통계관련 예산규모

(조사주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3개년 예산, 조사주기가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조사년도 기준으로 과거 3개년 예산을 기입)

- 자체 실시 비용
  - 조사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귀 부서에서 직접 통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예산(실사지도여비, 교육여비 등 포함)
  - 조사(또는 자료수집)를 위해 채용한 임시 또는 일용 조사원 인건비 등이 산출 가능하면 별도 기재
- 외부기관 위탁 비용
  - 산하기관·단체, 민간조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총예산(위탁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비용 포함)
  - 조사(또는 자료수집)를 위해 채용한 임시 또는 일용 조사원 인건비 등이 산출 가능하면 별도 기재

### 2.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현황

- 시스템 명칭
  - 통계생산 : 통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포함, 각종 조사시스템 뿐 아니라, 모집단관리시스템, 전자조사시스템 등도 포함  
(예시) 산업통계분석시스템, 인구동향조사시스템, 기업체모집단시스템
  - 통계관리 : 통계 원시자료 및 집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예시)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통계DW시스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국가통계DB관리시스템
  - 통계서비스 : 통계 원시자료 및 집계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  
(예시)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 경제통계시스템(ECOS)
- 운영장비
  - 각 통계업무 단계별로 사용하는 서버장비의 주요사양 및 DBMS 등 기입  
(예시) 주요사양 : IBM SERVER, 5.6GHz×32, 256GB  
DBMS : Oracle, My SQL, DB2 등
- 통계분석패키지
  - 통계분석에 사용되는 패키지를 기입  
(예시) SERVER형(혹은 PC형) SAS, SPSS, R, STATA 등

### 제3부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 1~10번 진단항목에 대한 통계작성 담당자의 평가의견을 5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란에 “○”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직관리실태 부문(1~5번) 평가 시에는 하위요소를 고려하여 각 항목을 평가하셔야 합니다.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조직 관리 실태	1. 조직의 리더(기관장)가 통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전과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품질에 관한 조직의 비전 제시</li> <li>■ 조직문화의 변혁을 통한 가치관의 정립</li> </ul>		✓			
	2. 조직의 리더(부서장)는 통계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품질에 대한 이해도</li> <li>■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적절한 지원 및 배분</li> <li>■ 조직리더에 의한 통계품질관리 추진</li> </ul>		✓			
	3. 조직리더(부서장)가 통계품질관리 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 및 프로세스를 수립 · 시행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품질에 관한 경영방침의 수립</li> <li>■ 이용자 중심의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중장기 전략목표 수립</li> <li>■ 합리적인 방침과 전략 전개</li> <li>■ 적절한 시스템에 의한 타당한 실행계획 수립</li> </ul>		✓			
	4. 작성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가 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품질관리 전담부서 설치 또는 전담인력 배치</li> <li>■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계획</li> <li>■ 품질 관련 교육수요파악 및 교육이수 실적 관리</li> </ul>	✓				
	5. 통계담당 직원은 품질관리 능력 개발 및 품질관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품질을 위한 전문적 모임의 활성화</li> <li>■ 통계품질 제고 동기부여</li> </ul>	✓				
통계 담당 자  인식	6. 지금 알고 있는 통계업무량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7. 현재 통계작성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예산이 적정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 현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9. 지금 알고 있는 통계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0. 통계작성 과정에서 품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제4부 통계작성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연구진 작성부분)

---

### I. 통계작성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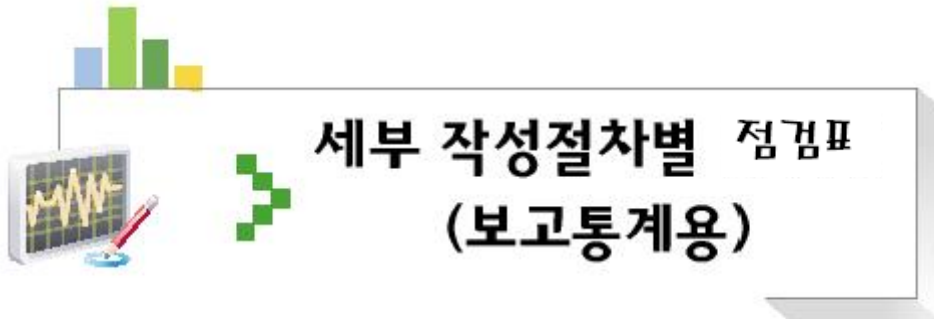
---

- 통계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담당자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자유롭게 기술

### II. 통계 품질관리기반 확보를 위해 개선할 사항

-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검토 및 통계담당자/관리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인지한 개선 필요 분야를 상세하게 기술

【별첨 4】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



부 문	무역
통 계 명	무역통계
승 인 번 호	13401
작 성 기 관	관세청
작 성 일 자	2012년 5월
작성자	통관기획과 ○ ○ ○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문항 하단에 제시된 세부 품질요소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에 체크(☑)한 후 이를 고려하여 각 문항을 평가하고 관련 근거자료 및 의견을 제시 (더 자세한 내용을 기술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 문서로 첨부)
- 해당 통계와 관계없는 문항인 경우에는 의견란에 '관계없음'으로 기입함

### 01 통계작성 기획

1-1. 통계작성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통계작성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명확성 여부
- 주된 활용분야에 대한 명시 여부
- 관련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 <근거자료>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 <의견>

1-2.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주된 이용자를 파악하여 이용자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자그룹별 이용자 현황)
-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여부  
(의견수렴 방법 및 주기)
- 이용자 의견을 통계작성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요구사항별 반영내용, 개선계획 등)

<근거자료>  
사용자 만족도 조사

---

<의견>

1-3.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문회의 등을 통해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이 통계작성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근거자료>

---

<의견>

1-4. 국내·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현재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준(국내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현재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준(국제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 (예시) 분류체계 :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표준질병·사인분류, 표준무역분류 등

<근거자료>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의견>

1-5. 통계작성 개편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통계작성 개편(분류체계·보고항목·보고양식 변경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여부

개편에 필요한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검토 여부

개편작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회의 등 개최 여부

개편작업과정 및 개편결과를 분석하여 문서화 여부

정기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편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2-1.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통계작성 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설정 여부
- 자료수집 기준시점 또는 자료수집 대상기간의 설정 여부

<근거자료>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의견>

2-2. 자료수집 및 보고 양식은 기입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양식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작성지침이 제공되는지 여부
- 양식에 포함된 각 항목의 논리적 배열 여부

<근거자료>

<의견>

2-3. 양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양식의 항목 변경/추가/삭제 등에 따른 사전검토 여부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2-4. 자료수집 및 보고 양식이 통계작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적합한 양식 구비 여부
-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 적합한 항목 수록 여부
- 필요에 따라 비밀보호 사항 공지 (관련법 조항 기입 등) 여부

<근거자료>

<의견>



### 3-1. 자료수집 및 보고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 등이 제공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양식의 각 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
- 양식의 각 항목별 기입요령 제시 여부
- 대표적인 착오사례 제시 여부
- 양식 작성 견본 제시 여부

#### <근거자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의견>

### 3-2.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담당자에게 통계작성 개요 및 업무처리 요령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여부
- 각종 양식의 변경/추가/삭제 시 별도 관련지침 시달 여부
- 통계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서(사례집, 팸플릿, 동영상 등) 배부 여부

#### <근거자료>

#### <의견>

3-3. 자료수집 시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의문사항 접수, 해결방안 마련, 결과 통보체계 구축 여부
- 자료수집 불응에 대한 처리지침 여부
- 보고기준시점 준수 여부

<근거자료>

<의견>

## 04 자료입력 및 처리

4-1.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전반적인 자료 입력 과정에 대한 흐름도 및 입력 지침서 마련 여부
- 자동화된 자료입력 프로그램 구축 여부
- 자동화된 입력 오류 점검 시스템 구축 여부
- 자료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전산파일(엑셀, 액세스 등) 또는 전산시스템 제공 여부

<근거자료>

<의견>

4-2.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규칙의 마련 여부
- 연관관계 분석에 의한 논리적 오류 점검 및 조치 여부
- 자동화된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시스템 구축 여부
- 이상치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여부

<근거자료>

<의견>

4-3.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개별자료 입력오류(미기재, 부실기재) 점검 및 보완 여부
- 개별자료 중복·누락 확인 및 보완 여부
- 집계표 형태의 보고자료 검증 여부

<근거자료>

<의견>



5-1. 관련 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관련된 자료 및 통계와의 비교분석 실시 여부

<근거자료>

<의견>

5-2. 시계열자료는 연속성이 있으며, 단절이 생길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통계의 개념, 산출방법, 기준, 작성 시기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산업, 직업등 관련 분류체계 개편, 조사대상 포괄범위 변경 등)에 대한 설명과 자료이용방법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5-3. 집계결과와 통계표간 일관성을 검토하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작성된 통계표의 일치성 여부(가로, 세로 합계 일치 여부, 단위 일치 여부 등)
- 항목간 집계결과가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5-4. 경제·사회현상이나 정책변화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정책변화가 통계수요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하는지 여부
- 통계의 개념, 정의, 분류, 작성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영향을 분석하는지 여부
- 변경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분석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5-5. 자료집계단계에서 생성되는 중간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중간 통계자료(예: 미공표되는 지역별 자료)에 대한 관리단계별 내부 검증 수행 여부
- 내부 검증단계에 관한 규정 및 검증 지침의 문서화 여부
- 검증과정의 기록, 분석, 검토 여부

<근거자료>

<의견>

5-6.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증 여부
- 관련 통계 간의 정합성 검증 여부
- 최종 통계자료의 현실변화 반영도 검증 여부

<근거자료>

<의견>



5-7. 공표된 잠정치, 확정치 간의 불일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불일치에 대한 원인 분석 여부
- 불일치에 대한 사전 점검체계(내부 기준 등) 마련 여부
- 원인분석결과의 문서화 여부

<근거자료>

<의견>

06



## 문서화 및 자료제공



6-1.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통계개발 및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여부
- 통계작성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 여부
- 통계작성 절차별 업무매뉴얼 작성 여부
- 업무내용 변경시 매뉴얼 보완 여부

<근거자료>

<의견>

6-2. 간행물 수록자료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간행물의 수치 및 표기 오류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오류의 분류, 기록, 분석 여부

<근거자료>

<의견>

6-3.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 통계개요, 자료이용방법 등 이용자를 위한 일반 사항 제공 여부
-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통계표 설명자료 등 수록 여부

<근거자료>

<의견>

6-4.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개편과정, 개편방법, 개편결과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개편 작업 후 자료의 불일치와 같은 자료이용 상 유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6-5. 보고양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공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보고항목을 모두 공표하는지 여부
- 미공표항목이 있는 경우 사유, 용도 등을 명시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6-6. 통계자료 공표 시 모든 이용자가 결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공표와 동시에 자료를 작성기관 홈페이지에 수록하는지 여부
- 공표와 함께 DB에 수록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6-7.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료수집부터 적절한 기간 이내에 공표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 작성 주기 : (        )
- 작성 기준시점(또는 기준기간의 마지막 날)에서 결과 공표일 까지 소요기간 15일  
평균 : (        )개월, 최대 : (        )개월

<의견>

6-8. 결과 자료의 공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작성기관 홈페이지 등에 통계공표 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는지 여부

예고된 통계공표 일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6-9.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보도자료, 보고서, CD-ROM, 인터넷, E-mail서비스, SMS 등 다양한 형태의 제공 여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지 여부

보고서 가격 및 구입방법, 개별자료 구입비용 및 이용절차 등에 대한 공지 여부

주요 통계사이트와 링크되어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6-10. 자료 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 개별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지침 마련 여부
- 개별자료 제공자를 예측할 수 없도록 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는지 여부 (식별정보 삭제, 마스킹 등)
-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6-11.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와 작성방법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분석,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7-1.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통계작성 절차, 자료수집도구 등이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여부
-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이나 비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7-2.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통계담당 직원이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통계담당 직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 여부
- 통계담당 직원이 바뀌어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유관 기관, 전문협회,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유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7-3.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개선을 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통계작성 과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내부 및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 여부
- 통계작성 과정별 새로운 방법론 모니터링 여부
- 통계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 통계자료에 대한 언론보도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여부

<근거자료>

<의견>

7-4.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 통계생산 절차의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여부
- 통계의 효율성, 시의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최신 IT 기술 이용 검토 여부
- 독립적 외부 전문가에 의한 통계생산 절차 효율성 검토 여부

<근거자료>

<의견>



7-5.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 통계작성이 완료된 후 수탁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사업계획서
- 보고양식 원본(또는 폐기 등에 관한 계획)
-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파일, 파일설계서
-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관련 사항(보고지침서, 사례집 등)
- 에디팅(내용검토) 요령서
- 자료처리 보고서(자료집계 및 분석시 사용한 통계기법, 명령문, 변수에 대한 설명, 오류 유형별 원인 및 처리결과, 무응답에 대한 대체방법 등)
- 최종보고서(통계표 및 분석결과)

<근거자료>

<의견>

## 품질 개선 의견서

- \*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진단 통계의 작성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 등을 서술해 주세요.
- \* 점검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개선의견 :